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논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고 윤 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The Impact of Trade Protectionism on the Exports of
Korea's Intermediate Goods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고 윤 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지도교수 김 석 민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고 윤 화

고윤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全 義 天(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沈 在 希(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 錫 珉(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1. 선행연구 검토	3
2.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6
제1절 통상정책의 의의와 추이	6
1. 통상정책의 목적 및 수단	6
2. 통상정책의 시대적 추이	8
제2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14
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4
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19
제3절 미국의 공정무역주의	24
1. 미국 공정무역의 개념과 논리	24
2. 미국 공정무역 관련 규범	28
제3장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원인 및 전개과정	34
제1절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발생원인	34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34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중국 제조업 고도화	39
3.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논쟁	41

제2절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와 시행조치	42
1. 미·중 무역분쟁 전개과정	42
2. 미·중 양국 관세부과 시행조치	43
제3절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45
1. 중국 측 입장	45
2. 중국의 대응 전략	49
제4장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50
제1절 분석데이터 및 방법론	50
1. 세계투입산출표	50
2. 총수출의 분해	51
3. 총생산과 최종재생산의 분해	53
4. 부가가치수출(VAX _f)	54
제2절 부가가치기준 대미 무역구조	55
1.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교역구조	55
2. 부가가치 기준 대미 무역수지	57
3. 대미 총수출의 최종수요지 분석	59
제3절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	61
1. 최종재생산의 국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61
2. 최종수요 감소의 중간재 수출 감소 효과	62
제5장 결 론	67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6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8
【참고문헌】	72

【 표 목 차 】

<표 1-1> 미·중 통상마찰의 한국경제 영향 분석 결과 4
 <표 2-1> USTR의 무역법 301조 관련 통상압박 수단 30
 <표 3-1> 미국의 무역규모 추이 35
 <표 3-2> 미·중 양국 추가 보복관세 발효 내역 44
 <표 4-1> 세계투입산출표(WIOT)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50
 <표 4-2> 국별 대미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57
 <표 4-3>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59
 <표 4-4> 국별 최종재생산의 수입 중간재 투입 구조 62
 <표 4-5> 세계 최종수요 감소의 국별 중간재수출 감소 효과 63
 <표 4-6> 한국의 산업별 중간재수출 감소효과 64

【 그림목차 】

<그림 3-1>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34
<그림 3-2> 미국 교역국별 상품수지 적자 비중	35
<그림 3-3>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추이	36
<그림 3-4> 미국의 제조업 GDP 추이	36
<그림 3-5> 미국의 품목별 수입액 추이	37
<그림 3-6> GDP 대비 국별 최종소비지출 비중	38
<그림 3-7> 국별 GDP 대비 총저축, 총투자 비중	38
<그림 3-8> 국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39
<그림 3-9>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40
<그림 4-1> 세계 부가가치 요소별 비중 추이	55
<그림 4-2> 한국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비중 추이	56
<그림 4-3> 국별 대미 공산품 무역수지(2014년)	58
<그림 4-4> 한국 대미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분해	60
<그림 4-5> 세계 최종수요 감소의 국별 중간재수출 감소효과	63
<그림 4-6> 국별 한국 중간재수출 감소 효과	65
<그림 4-7> 산업별 한국 중간재수출 감소효과	66

ABSTRACT

The Impact of Trade Protectionism on the Exports of Korea's Intermediate Goods

Ko, Yun-Hwa

Advisor : Prof. Kim, Seog-min,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ecrease in the global aggregate demand due to the rising protectionism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ter-industry analysis method on the export of South Korea and to derive its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analysis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South Korea's total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ntermediate goods exported to third countries via the United States accounted for only 5.8%.

Second, the effects of the decreased aggregate demand on the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in the world were analyzed with the final goods production decomposition analysis method (backward linkage) of WWYZ (2016) and the global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are estimated to have decreased by USD 74 billion.

Third, China was found to be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impact on intermediate goods exports of Korea due to the decline in final demand with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ccording to the analysis, a 1.0% fall in China 's final reproduction would decrease Korea' s intermediate exports to China by about USD 730 million.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 set of response strategies are suggested including; preparing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re-establishing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GVCs, strengthening the position in the Asian GVCs, preparing for appreciation of the yuan, beefing up the high value-added service industry and establishing linkages with manufacturing, diversifying export regions and expanding final goods exports, increasing FTA utilization, and enhancing origin managemen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1월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간 구축해 온 국제통상 규범의 틀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차별주의와 개방주의 원칙의 다자 간(multilateral) 국제통상 규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다자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미국의 국제적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중 통상마찰이 양국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자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일반균형연산 모형(CGE), 국제산업연관분석, 또는 패널데이터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중 통상마찰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비록 분석모형과 시나리오의 차이에 따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양국 간 통상마찰이 확대될 시, 미국의 GDP성장률은 0.1%~0.2%, 중국의 GDP성장률은 0.3%~0.5%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0.02%에서 최대 0.6%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우리나라의 대응이 취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켰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최근 국제무역의 가장 큰 화두는 부가가치기준 무역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경제의 국제분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무역, 투자 및 생산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은 최종재 상품의 교환(trade in final goods)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나,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구조에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로서, 아이폰(iPhone)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사실상 디자인·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수입(12.2%)하고, 중간재는 대만, 독일, 한국 등에서 수입(84.3%)하며 중국은 단순 조립(3.5%)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¹⁾ 그러나 총량기준 무역데이터만으로 무역수지를 측정할 경우 미국은 아이폰 최종재의 무역적자국이 되지만, 이를 중간재 투입 기준으로 측정하면 오히려 미국이 흑자국이 된다. 이는 기존의 총량기준 무역데이터가 최종재의 생산과 판매 이전에 중간재 교역이 중복 계산(double counting)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T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국제투입산출자료(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구축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 국가 및 지역별 무역구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와 WWZ(2013)의 총수출 분해(Decomposition of Gross Trade)과 WWYZ(2016)의 최종재생산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한국의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와 세계 최종재생산 감소의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는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적 근거와 미국의 공정무역주의에 개념과 관련 규범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세계 최종재생산 감소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1) OECD and WTO (2012), "Trade in Value-added: Concepts, Methodologies and Challenge," *JOINT OECD-WTO NOTE*, p.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가. 국제산업연관분석

국제산업연관분석과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의 큰 흐름은 총수출분해를 통한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 분석과 총생산 및 최종재생산 분해를 통한 글로벌가치사슬(GVCs) 측정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Johnson and Noguera(2012, 이하 'JN'이라 칭함)는 총수출의 분해방법과 양자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국내부가가치수출(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 VAX)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총수출 대비 국내부가가치 수출 비율(VAX Ratio)을 통하여 무역구조와 GVCs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Stehrer(2012)는 WIOD를 이용하여 일 국가의 최종수요에 내포된 다른 국가의 직·간접적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Koopman et al.(2011, 이하 'KWW'라 칭함)은 총수출에 내제된 이중계산 항목을 분리하여 총수출을 9가지의 요소로 분해하고, VAX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KWW(2011) 방식은 전방연계와 후방연계의 차이 발생으로 양자간 산업별 교역액의 합이 총수출을 상회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Wang et al.(2013, 이하 'WWZ'라 칭함)은 전방연계와 후방연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산업 수준에서 총수출을 16가지 요소로 완전 분해함으로써 교역상대국, 산업별로도 정합성을 확보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Wang et al.(2017, 이하 'WWYZ'라 칭함)은 GVCs의 측정을 위하여 국가-산업별 국내총생산(전방연계) 및 최종재생산(후방연계)의 분해를 위한 수학적 개념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를 진일보시켰다.

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 분석

미·중 통상마찰이 양국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자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일반균형연산모형(CGEM), 국제산업연관분석, 또는 패널데이터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중 통상마찰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다음 <표 1-1>은 주요 연구

기관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²⁾

비록 분석모형과 시나리오의 차이에 따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양국 간 통상마찰이 확대될 시, 미국의 GDP성장률은 0.1%~0.2%, 중국의 GDP성장률은 0.3%~0.5%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표 1-1>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및 기타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국내 관련연구의 예측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0.02%에서 최대 0.6%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³⁾

<표 1-1> 미·중 통상마찰의 한국경제 영향 분석 결과

일자	연구기관 (연구자)	방법론	예측 결과
2016.12	한국은행 (권태현·이인규)	국제산업 연관분석	-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 시, 한국의 대중 총수출은 0.36% 감소
2017.04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국제산업 연관분석	-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 시, 한국 GDP는 약 0.31% 감소 - 미국의 대중 수출 10% 감소 시, 한국 GDP는 약 0.04% 감소
2017.09	한국은행 (백승진·김부경)	FRB/US모형, OECD TiVA 통계	- 모든 국가의 대미 무역비용 1.6% 증가 가정 시, 충남 GRDP(3년 누적 기준) 0.37%, 광주전남지역 GRDP 0.23% 감소
2018.08	국제무역연구원 (강내영·심해정)	국제산업 연관분석	- 미국 GDP 0.1% 감소, 중국 GDP 0.2% 감소 가정 시, 한국 GDP는 0.02% 감소
2018.03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외)	패널데이터분석	-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4.8%에서 10%로 인상 가정 시, 한국 GDP성장률은 0.6% 하락, 고용은 15.8만명 감소
2018.04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정귀일)	패널데이터분석, 국제산업 연관분석 (한국은행 자료)	-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중 총수출은 0.03%(1.9억 달러) 감소 - 미·중·EU 관세가 10%p 인상될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한국 전체 수출은 6.4%(367억 달러) 감소할 전망

2) 김석민 (2018), “미·중 무역분쟁과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대응전략”, 「2018 지역경제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p. 6.

3)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영향분석에서는 한국 GDP 감소율은 최소 0.02%에서 최대 0.45%로 예측됨.

2018.04	산업연구원 (이진면)	국제산업 연관분석	-미국이 중국산 1,333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0.07%(1.1억달러) 감소, 총생산은 2.5억달러(0.02%) 감소 -중국이 미국산 128개 품목에 15~25% 관세, 106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0.13%(0.9억달러) 감소, 총생산은 2.4억달러(0.02%) 감소
---------	----------------	--------------	--

자료 : 김석민 (2018) 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요약 및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국제산업연관분석은 각 국가-산업의 투입-산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일 국가-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의 총수출 분해 시 한국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 및 중복계산 분 등이 완전히 고려되지 않아 미·중간 통상마찰의 영향이 과대평가되거나, 다자간 무역경로에 의한 간접효과를 누락시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WWZ(2013)의 총수출분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부가가치무역구조와 수출의 최종귀착지를 각 산업별로 명확히 측정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또한 WWYZ(2016)의 국내총생산, 최종재생산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세계 최종재생산 감소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측정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2장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제1절 통상정책의 의의와 추이

1. 통상정책의 목적 및 수단

가. 통상정책의 목적

통상정책이란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행하는 정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상정책이란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특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적 이해조정과 외국과의 이해조정을 통하여 행하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이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그 중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무역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이라고 할 때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제도를 변경하거나 수출과 수입을 장려 또는 억제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는 반면에, 통상정책은 무역정책을 포함하여 통상에 대한 국가전략이나 대외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⁴⁾

통상정책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에는 통상관계가 물품의 수출입 위주였기 때문에 통상정책도 이에 대한 정책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국제통상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생산요소 등에 대한 국가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국내제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기준, 부패 등의 사회적인성격을 갖는 문제와 인류의 공동의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나. 통상정책의 수단

각국은 대체로 통상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생산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데, 이를 위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려 한다. 수출증대는 수출산업의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국내실업률을 감소시켜 고용수준을 상

4) 박종수 (1996), 「국제통상관계론」, 두남출판사, p. 167.

승시키게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관세와 비관세적 수단이 있다.

국내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육성조치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고용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육성조치는 오히려 국제무역질서를 왜곡시키고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게 되어 결국 국내산업에도 궁극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통상정책의 운용은 일국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궁극적인 과제는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 할 수 있다. 폐쇄경제를 고집할 경우 타국과 무역을 통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관세수단과 비관세수단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관세는 통상정책 수단 중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정수입과 산업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용된다. 관세의 변동은 직접적으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상품의 경우 국내소비를 억제시키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그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갖게 된다. 국제거래에 제한을 가져오는 관세 이외의 모든 통상정책 수단을 비관세수단이라 하는데, 이러한 비관세수단의 등장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통상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에 대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규제가 지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수단을 통상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활용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따라서 관세수단의 효과와 동일한 다른 수단들의 동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비관세수단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과거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old protectionism)가 주로 관세적 수단을 활용하였다면 비관세적 수단을 주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흔히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라고 한다. 비관세수단의 종류는 500~8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지만 주로 사용되는 비관세수단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수출입 수량의 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수출이나 수입을 허용하는 제한조치인 수량할당(quota), 수출국에게 수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하도록 협상하여 수출국 스스로 제한하도록 하는 수입제한적 조치인 수출자율규제(VERs), 그리고 일시적인 수입품의 증가로 인하

여 자국시장이 교환된다는 논리적 근거로 수입을 규제하는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이 널리 사용되어 온 비관세적 수단이다.

2. 통상정책의 시대적 추이

통상정책의 형태는 대외경제거래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규제조치를 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크게 구분된다.

자유무역주의(free trade)는 정부가 대외무역거래에 정책적인 개입을 가능한 한 축소 또는 폐지하여 국제무역을 자유롭게 보장하여 줌으로써 국제분업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과 무역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정부가 국내산업보호·국제수지의 개선·고용증대·물가안정 등의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대외무역거래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교차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가. 19세기 영국 중심의 자유무역주의

19세기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시작하여 성공시킨 영국이 명실 공히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760년대 이래 섬유공업부문의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생산조직의 변혁이 시작되었으며, 섬유공업 중에서도 특히 면방직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이래 급격히 진행되었던 영국의 산업혁명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각종 산업분야에 걸쳐 일단의 완성을 거두게 되어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시대가 시작되었다. 19세기 전반(前半)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산업혁명 경험을 토대로 하여 프랑스(1830년대), 독일(1840년대) 등 서유럽과 미국(1860년대)도 급진적으로 산업혁명에 돌입하였으며,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영국의 산업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결국 팍스 유로피나(Pax Europina)시대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고, 이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 리카아도, 밀 등 소위 고전경제학파들이 제시한 자유무역론이다.

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20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세계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열강들의 치열한 블록 경제의 확산과 심화가 지속됨에 따라 관세전쟁과 보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는 첫 번째의 세계적인 대전쟁(제1차 세계대전 : 1914년 7월 28일~1918년 11월 11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결국 승전국(연합국 :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패전국(동맹국 : 독일, 오스트리아)간의 심각한 대립양상의 씨앗이 되었고, 또한 미국은 19세기의 정치·경제 대국이었던 영국을 대신하여 국제간의 지도적 지위를 걸머지게 되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경제시설의 폐허로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세계는 설상가상으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위 세계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년~1933년)이다. 1929년 가을 미국 뉴욕 월가(Wall Street)의 증권주가가 대폭락함으로써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1933년에 미국에서 채택된 뉴딜정책(New Deal Policy)과 영국에서 1932년 7월에 체결된 오타와협정(Ottawa Agreement)에 의하여 확립된 스텔링 블록(Sterling block)에 의해서 1933년에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또다시 세계적인 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 : 1939년 9월 1일~1945년 8월 15일)을 겪게 되었다.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과 동맹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파시즘 구축국)간에 벌어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전체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진영(자본주의 국가군)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진영(공산주의 국가군)으로 양분되어 양진영간의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전쟁의 속성, 즉 서구열강간의 제국주의적 전쟁,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간의 이념전쟁, 그리고 제국주의 대 피압박민족간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3가지의 전쟁성격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첫째, 미국경제의 절대적 비중이 확보되고, 유럽경제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비중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유럽경제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시켜 결

국 팍스 유로피나(Pax Europina)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가 시작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이 압도적인 정치·경제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전쟁기간 중 오로지 미국만이 산업시설의 파괴를 모면함으로써 생산력의 기반을 그대로 보존하게 됨과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군수품 독점 판매자의 입지까지 누렸던 반면에, 유럽제국들은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생산력의 기반인 산업설비의 처참한 파괴를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권이 확대·강화되었다.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볼셰비키혁명)으로 소련만이 유일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련만의 사회주의체제가 동구·아시아등으로 확대되어 다수국 사회주의체제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팍스 루쏘아메리카나(Pax Russo-Americana)시대가 시작되었다.

셋째, 신생독립국가의 탄생과 서구시장의 축소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식민지체제가 붕괴되고 한국 등 많은 신생독립국가가 탄생되어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게 됨과 동시에 서구자본주의 시장은 그만큼 축소되게 되었다.

라. GATT의 출범과 자유무역주의 확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압도적인 자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국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기본 틀인 GATT-IMF체제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은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 연합국 44개국을 초청하여 전쟁의 근본원인을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가혹한 전후처리와 1929년 대공황의 결과로 취해진 세계 각국의 지나친 보호주의 정책과 경제블록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는 세계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나아가 세계번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무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합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이 협정에 의해서 탄생된 국가기구가 3가지 있는바, 그것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및 외환의 안정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질서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1934년 이래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었던 쌍무통상협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GATT체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GATT체제의 출범으로 자본주의권의 세계무역은 급팽창하게 되었고, IMF를 통하여 각국은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기초적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에 처해지게 될 경우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외화자금을 인출하여 그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부르는 IBRD를 통해서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의 부흥과 저개발지역의 개발원조자금의 공급원이 되어 세계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GATT-IMF체제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권 세계경제는 착실한 경제성장을 실현했으며, 또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출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높은 수출입증가율은 그동안의 착실한 경제성장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패권국이었던 서독·이탈리아·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입증가율이 승전국들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GATT-IMF체제가 지향했던 자유무역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국제유동성의 공급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로써 GATT가 추구하였던 자유로운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이 이 시기에 화실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 1970년대 신보호무역주의 출현

1960년대 말에 가서는 GATT-IMF체제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누적되어 스스로 그 체제의 동요와 재편을 강요받기 시작하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 후 막강하고 유일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국내통화인 달러가 국제적 신인도(confidence)를 갖게 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냉전체제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발발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해외로의 달러누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었고, 대신 금가격은 계속적으로 폭등하게 되었다. 10년 이상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이러한 달러가치의 하락과 금가격의 폭등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금파동(gold rush)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태환(gold convertibility)을 일시적

으로 중단시킴과 동시에 10%의 수입부과금제도를 채택하는 소위 닉슨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닉슨쇼크로 말미암아 전후 자본주의권의 세계경제 질서를 지탱해오던 GATT-IMF체제의 기본틀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소위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가 대두되면서 세계경제질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73년 10월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동 산유국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의 국가들에 대한 석유금수조치(embargo)를 단행하는 소위 석유 무기화정책으로 석유파동(oil shock)이 시작되었다. 이 석유파동은 결국 다른 자원보유국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자원파동(resources shock)을 초래하게 되었다.

1973년의 제1차석유파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79년에 다시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장기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가 맞대결하면서 냉전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막강한 미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시대가 지속되어 왔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 기울기 시작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미국이 197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는 물론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까지 적자로 반전되어 대외채무가 1985년부터는 드디어 순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이 이러한 후퇴의 과정을 밟아오는 사이에 전후 패전국이었던 서독·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제국들은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여 EC의 경제력은 미국을 바짝 뒤쫓게 되었다. 또한, 전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경제 성장률과 수출입증가율을 급진전시켜 나아갔다. 게다가 1980년대부터 수출을 주도로 하는 공업화전략을 추구해온 신흥공업국(NICs) 특히 아시아의 신흥공업국(ANICs)들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로써 1980년대의 세계경제는 그 이전의 미국중심의 1극체제에서 미국·EC·일본·NICs라는 4극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1995년 이전까지 급진전하게 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첫째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재편, 둘째 세계경제 주도력의 다원화, 셋째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권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다자간무역질서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 WTO 체제 출범과 자유무역주의 확대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은 1980년대 말까지 침체의 길을 걸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대역전드라마를 연출하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하여 소위 “신경제”(new economy)라는 용어까지 창출하면서 10년 이상 동안 “꿈의 경제”(economy of dream)를 실현하였다.

한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경제를 괴롭힐 수 있었던 일본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만성적인 불량채권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버블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되어 지금까지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1980년대 이후 그칠 줄 모르고 타오르던 중국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1995년 1월 1일 WTO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21세기에 접어들어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과 동시에 WTO 체제하에서의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져 세계경제가 자유무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WTO하에서는 공산품은 물론이고 비공산품까지도 전면적으로 시장개방의 물살을 타게 될 것이며, 관세 및 비관세장벽도 제거되리라고 기대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시대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난 GATT/UR에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경험했던 많은 개도국과 제3세계국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세계화와 개방화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자세이어서 순수한 자유무역시대의 도래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제2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가.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 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Quesnay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uesnay는 국가 중심의 보호 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 등을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사상은 스미스(A. Smith)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A. Smith의 자유무역론

아담 스미스(Smith)의 「국부론」에 나타난 자유무역론의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

5) Adam Smith (1937),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The Modern Library, Book I, Chap.3; Book IV, Chaps.1~3.

(1) 국제분업론

스미스(Smith)는 자유무역론을 주장함에 있어 그의 이론적 근거를 국제분업의 이익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제분업론을 해명하기 위하여 우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경제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합리화를 추구하였다. 곧 인간의 근본적인 경제활동의 동기는 이기심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 자신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자본과 노동의 이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각자의 이기심을 위한 경제활동이 상충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며 각자의 이기심에 의한 이익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스미스(Smith)는 이러한 원리를 외국무역에 적용시키고 있다. Smith는 국가간에 무역을 자유로이 방임하여, 외국에서 어떤 재화를 자국보다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수입하고, 자국이 외국에 비하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한다면 무역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정부가 기업가의 생산활동을 자유로이 방임한다면 노동과 자본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전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반대로 정부가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자국내에 비효율적인 산업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가 생산력이 높은 산업에서 생산력이 낮은 산업으로 이동됨으로써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된다고 지적하였다.

(2) 자유경쟁론

자유경쟁론은 고전학파의 이론 중에서 자유무역론을 옹호하는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이다. 자유경쟁은 일국에 있어서 산업기술을 혁신시키는 가장 유력한 자극제이며, 경영방법의 개선 역시 이에 의해서만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고 아울러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도 자유경쟁에 일임하는 것이 서로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선진국인 영국의 입장에서 고려되었던 것이며, 단지 자유경쟁의 단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

(3) 소비자 이익론

모든 생산의 최종목적은 소비에 있으므로 결국소비자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곧 모든 소비행위는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생산자 이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물품의 공급지가 어느 지역이든지를 불문하고 소비자는 최저가격으로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데, 만일 국가가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소수의 생산자를 위하여 다수의 소비자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수출장려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그 제품의 판로를 해외시장으로 확장시킬 경우, 그것은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적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군사상의 문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스미스(Smith)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간에 적용해서 국제분업론을 체계화한 후, 스코틀랜드의 포도주 생산의 예를 들어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였으나 리카아도(Ricardo)는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리카아도의 주장이 비교생산비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제분업의 이익, 즉 무역의 이익을 논증하는 동시에 국제분업이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국제무역론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자유무역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⁶⁾ 한편, 밀(J.S. Mill)은 Ricardo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분배문제와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교역조건)을 규명하였는데, 이 이론이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이다. Mill은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 즉 교역조건이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내의 어느 점에서 결정되는가에 대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교역조건은 결국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Mill은 이 교역조건에 의하여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분배비율이 결정되며, 이러한 교역조건은 교역상대국의 상호수요의 규모 외에도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흄(D. Hume)은 물가-정화유출입기구(Price-specie flow mechanism)를

6) David Ricardo (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J. M. Dent and Sons, 1948 (Originally Published in 1817), Chaps. I, IV, XXIII.

통하여 일국이 무역에 의해 흑자가 발생하면 금이 유입되어 통화량이 팽창됨으로써 국내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수출이 감소되고 수입이 증가되어 흑자가 시정된다. 이와 반대로 일국이 적자상태가 되어 금이 유출되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써 국내물가는 하락하게 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적자가 시정되어 국제균형이 회복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제균형기구 그 자체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일단 교란된 국제균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는가를 해명했다.⁷⁾

라. 자유무역주의의 한계

(1) 국가간 분업의 어려움

국제적 분업관계의 조화로운 배치가 어렵다. 산업에 따라서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도 있고 작은 산업도 있으며, 국가경제발전에 중요성이 큰 산업도 있고 작은 산업도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는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산업을 자국에 특화하려 한다. 또한 자유무역이 국가 간에 분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국가 간의 분업이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배분해 주지를 못한다. 특화를 통한 분업을 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어떤 산업에 특화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화에 따른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국제수지의 불균형

국제수지의 불균형의 발생은 자유무역의 지속을 어렵게 한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에서는 국가전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비교열위산업만큼 비교우위산업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분업하면 국제수지도 균형 잡히는 것을 가정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틀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전반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나라는 국제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적자의 누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의 상태에서는 국가가 무역에 대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7) John Stuart Mill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Vol. II, J.A. Hill and Company, 1904(The first edition of *Principles* appeared in 1848).

(3) 무역에 따른 조정비용의 발생

자유무역에서는 비교우위가 정태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무역에 따른 조정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지만 조정비용은 경우에 따라 매우 클 수도 있다. 자유무역의 효율성은 생산요소의 산업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요소의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농업이 비교열위에 있다고 해서 평생을 논밭에서 살아온 농부가 전자산업에 투입될 수 없으며, 섬유산업에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섬유생산설비를 자동차생산에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4) 국가간 경쟁력의 차이

세계에는 국가 간에 경제발전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거의 산업 전 범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산업 전 범위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으로는 안정적인 산업형성이 어렵다. 선진국들의 상품보다 더 품질 좋고 값싸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수지에서라도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5)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무역에 의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업화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업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의한 무역이익의 창출보다는 보호정책에 의한 공업육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려하는 점은 국제적 분업관계의 고착화이다. 자국이 1차산업이나 저부가가치산업에 특화하는 무역구조로 고착화되면 경제발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6) 해외의존에 대한 우려

독립성은 국가가 추구하는 중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국가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자립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상호의존되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필요로 한

다. 산업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의 유지와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후진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해밀턴(A. Hamilton)과 리스트(F. List)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런데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무역의 자연적 질서를 파괴하고 무역이익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산업, 정채산업 및 농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초기에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단순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교역조건 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 소득분배론 등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하에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보호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이 자유무역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호무역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를 들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유치산업보호론

List가 주장하고 있는 보호무역론에 의하면, 일국의 통상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List에 의하면, 자유주의통상정책은 선진공업국에는 적합한 통상정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개발도상국에는 오히려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더 적합한 통상정책이 된다고 하였다. 유치산업은 규모가 작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국의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그 산업이 성장하여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외국과 경쟁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후 이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였을 때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은 그 이론적 근거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 무역이론인 비교우위의 개념에 대한 회의적 견

해이며, 둘째는 공업부문인 수입대체산업의 보호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비교우위의 개념은 정태적인 개념으로서,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요소부존도와 기술수준 및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의 생산특화가 고정되게 된다. 그러나 유치산업보호론은 위와 같은 정태적인 비교우위의 개념에 대하여, 현재는 공업부문의 생산이 비교열위에 있지만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의해서 비교우위로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수입대체산업부문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공업부문이며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유치산업이라 할 때,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유치산업은 성숙된 외국산업에 압도되어 성장의 기회를 잃고 만다. 그러나 보호무역을 실시하여 유치산업을 일정기간 보호하게 되면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수입대체산업인 공업부문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보호무역에 의해 국내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므로 자본축적이 증가되고 기술진보가 촉진되어 경제가 발전되게 된다.

보호무역의 또 다른 하나의 주요한 경제발전효과는 애로우(K.J, Arrow)의 '경험을 통한 기술습득'(learning by doing)이다 실제로 생산경험이 없을 때는 생산성이 낮았지만 공업부문에서의 생산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미숙련공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교역조건개선론

교역조건개선론은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로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특히 마셜(A. Marshall)과 에즈워드(F. Edgeworth)는 수입품에 적당한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부과국은 자유무역 때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관세는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프레비쉬 (R. Prebisch)는 보호무역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소득탄력성의 차이에 두고 있다. 즉 공산품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농산품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므로 경제의 발전, 즉 소득의 증가에 따라 농산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역조건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통상정책은 선진국에게는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에는 불리한 정책이 되며, 자유무역은 선진국

의 경제발전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급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소득격차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산품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통한 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으로부터 탈피하여 공업화를 지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⁸⁾

다. 소득분배론

국제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생산요소간에 소득분배를 변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국제무역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스톨퍼(W.F. Stolper)와 사무엘슨(P.A. Samuelson)은 1941년 “보호무역과 실질임금”(Protection and Real Wages)⁹⁾이라는 논문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미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은 임금이 낮은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정리는 보호무역주의의 유력한 이론적 근거로 인정받고 있다. 결국보호무역은 그 국가의 희소한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고 풍부한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소득의 증대를 방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의 경우와 정반대의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국제수지개선론

보호무역론은 국제수지의 악화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주장되고 있다. 히스(J.R. Hicks)에 의하면, 이러한 보호무역론을 ‘고용·국제수지론’이라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과 국제수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령 일국이 국내 과소고용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나 또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를 증가시킨다면 국제수지는 균형을 잃게 되며 이와 반대로 국제수지를 균형화하려면 과소고용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제균형이 달성되지 않고, 국제균형을 유지하려

8) Raúl Prebisch (1962),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le Problems*,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February.
 9) Wolfgang F. Stolper and Paul Samuelson (1941), "Protection and Real Wag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Nov, pp. 58-73.

고 하면 국내균형이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의 고용상태를 무시한다면 강력한 무역제한조치에 의하여 국제수지의 역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국제수지상태를 무시한다면 과감한 경제확대정책에 의하여 과소고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에 모순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균형과 국제균형이 동시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보호무역이 필요하게 된다.¹⁰⁾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관세, 수입과징금, 수입할당제, 수출보조금 등 일련의 무역상의 조치에 의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 보호무역주의의 한계

(1) 자국산업의 경쟁력의 약화

보호무역조치는 외국산업과의 자유경쟁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호무역으로 국내산업이 외국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산업이 육성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국의 산업이 비경쟁적 환경에 안주하게 됨으로써 경쟁에 따른 발전의 효과를 갖지 못하게 된다. 국내기업은 해외의 경쟁자들과는 경쟁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내의 좁은 범위에서만 경쟁하게 됨으로써 기술개발, 경영혁신에 등한시하게 되며,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경영방식 속에서 생산의 확대나 시설투자가 지연되고 생산구조가 취약해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2) 소비자후생의 감소

보호무역은 소비자의 외국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키게 된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폭넓은 선택기회를 갖는 가운데 국내외의 어느 상품이든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을 때 효용수준이 향상된다. 그러나 보호주의적인 조치로 외국 상품의 사용이 제한되면 상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줄게 되며, 외국상품의 국내소비가격이 상승하고 동종의 국내상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수준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10) J. R. Hicks (1937), "Mr. Keynes and the Classics: A Suggested Interpretation," *Econometrica*, vol.5, pp. 147-159.

(3)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보호무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 보호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비효율적인 부문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체산업의 생산효율이 감소하여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보호무역은 특화생산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을 억제하여 생산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는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의 차원에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4) 타국의 보호적 대응조치

자국의 수입억제는 상대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므로 상대국의 국제수지나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자국의 보호주의적인 조치는 상대국의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가져오기 쉽다. 상대국도 국제수지와 같은 무역균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국의 수출감소로 인한 국내경제의 침체는 상대국의 수입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자국의 수출감소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자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양국간의 교역의 감소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인 이익을 감소시키며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후생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5) 국제적인 마찰과 갈등의 발생

보호주의는 자국의 산업육성을 위하여 상대국에 특화생산을 못하게 하거나, 자국의 실업의 해소를 위하여 상대국에 실업을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결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국가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대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복적인 보호주의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의 발전은 국가 간의 호혜적인 선린관계를 손상시키고 경제적인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관계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절 미국의 공정무역주의

1. 미국 공정무역의 개념과 논리

가. 공정무역의 개념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가 상호간에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즉, 상대국의 수출자가 자국에서 누리는 정도의 혜택을 자국의수출자도 그 상대국에서 누릴 때 공정하다는 것이다.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을 무역원칙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무역은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와 보복조치에 대한 근거가 되거나 자국의 보호조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공정무역은 그 말의 의미에 있어서는 타당성에 의심이 여지가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공정무역이라고 할 때 공정은 실제 어떠한 경우일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은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경쟁조건으로서의 공정이다. 경쟁조건으로서의 공정은 자국수출자의 상대국에서의 활동여건이 상대국 수출자의 자국에서의 활동여건과 동일 할 것을 의미한다. 자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비하여 상대국은 외국상품이 수입되기 어려운 시장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국 수출자는 수출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덤핑을 한다면 공정무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쟁결과로서의 공정이다. 경쟁결과로서의 공정은 양국간에 무역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국이 상대국에 수출한 만큼 상대국에서의 수입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의 기준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경쟁조건으로서의 공정은 의미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는 국가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무역여건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동일한 경쟁조건하에서 무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조건의 동등성만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는 국제무역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경쟁결과로서의 공정도 그 적용상에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현재의 국제무역은 다각적인 무역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는 다른

상대국과의 무역흑자로 보전되어진다. 양국 간의 쌍무적인 관계에서의 무역균형만을 목표로 한다면 국제무역은 발전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공정무역은 어느 개념으로도 명확하게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다. 물론 국가 간의 경제사정의 차이가 반영한 공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떤 차이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나. 미국 공정무역의 성격

공정무역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과 자유무역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무역제한적인 불공정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정무역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가 개별국가와의 무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또한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을 강제하기 위해서 결국 자국시장에 대한 상대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보호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다. 공정무역이 통상전략의 무기로 사용된 경우,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영어의 tid for tad, 프랑스어로는 quid pro quo)의 정책지향이 된다. 언급한바와 같이 공정무역이란 ‘동등한 등가물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각각의 당사자의 행동은 그에 앞선 상대국의 행동을 조건으로 하며, ‘선에 대해서는 선’(good for good)으로, ‘악에 대해서는 악’(bad for bad)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다. 상호주의와의 관계

상호주의는 공정무역의 논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상호주의는 그 성격상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적용분야 및 강조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어느 것도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상호주의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기의 행동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조건부적 성격’과 상호간의 교환 관계에서 ‘영가성’(零價性)의 확보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¹¹⁾ 상호주의의 이 같은 본질적 특성으로 국제무역 분야에서 상호주의

는 거의 예외 없이 무역자유화 또는 시장개방의 논리로 이용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가가 비록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상호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주권국간의 상충적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법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협상준칙 또는 원리가 필요하다. 상호주의는 바로 그러한 경우의 협상준칙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면에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는 전통적으로 ‘쌍무적인 무역양허의 제공’ 즉 무역협정국 각각이 의무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등한 수준의 무역양허를 제공하게 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호주의는 무역협정에서 각국이 쌍무적으로 제공하는 양허가 국가간에 전반적인 또는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주의의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무역양허의 등가성’, 즉 어느 정도의 균형을 피차가 수용할 만한 대등한 균형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런 점을 의식하여 바그와티(Bhagwati) 교수는 상호주의를 ① 전면적 상호주의(full reciprocity)와, ② 일차적 상호주의(first-difference reciprocity)로 나누고 있다. 먼저 ‘전면적 상호주의’는 소위 총량(stock)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정 시점에서 그리고 모든 산업(또는 상품) 부문에서 양국의 시장접근, 즉 실질적인 시장개방의 수준이 대등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비하여 ‘일차적 상호주의’는 유량(flow)개념 및 한계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협정당사국간의 시장접근성 또는 시장개방 수준의 차이를 일체 불문에 부친 채, 협상시점을 기준으로 당사국간에 교환되는 양허의 균형만을 문제로 삼는다.¹²⁾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상호주의 즉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 보복위협을 가하면서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미국의 새로운 무역전략을 공격적 상호주의로 명명하고 있다.¹³⁾

라. 미국의 공정무역 논리

-
- 11) Rober O. Keohane (1986),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1), pp. 5-8.
 - 12) 우루과이라운드를 포함한 8차의 GATT 무역협상라운드에서 주된 협상원칙은 ‘일차적 상호주의’라 할 수 있다.
 - 13) Jagdish Bhagwati and High T. Patrick (1990), *Aggressive Unilateralism : America's 301 Trade policy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New York : harvester Wheat sheat, p. 132.

수입규제 강화와 시장개방압력 강화라는 양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미국 측은 논리는 공정무역과 상호주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먼저 공정무역론은 진정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상호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공정무역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적자의 주원인이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은 미 통상법 301조와 1930년 관세법 337조(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규제조항)에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고 또한 시장개방요구에 대한 거부 즉 시장폐쇄 상태의 지속을 불공정무역이라고 보는 경향마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무역의 규범적 논거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상호주의 개념은 미국이 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시장접근 및 투자기회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미국은 자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간 협정을 이탈하여 2국간에서 상대국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무역장벽의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보호의 수준’ 자체를 같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는 더 나아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¹⁴⁾ 수입목표의 설정, 일정한 시장점유율 보장, 무역수지개선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이 시장접근 장애, 즉 무역장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무역수지동향에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상호주의논리는 그 국가 또는 부분별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양국간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이유로 흑자국의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지향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제무역관계에 있어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추구하는 규칙지향적인 GATT/WTO이념에 배치된다.

이러한 상호주의 논리는 2국간 또는 부문별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리와의 상충된다. 어쨌든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 상호주의 정책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강화로 일방적인 행동에서 다자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인된 절차로 성격이 전환되게 되었다.

14) Tomas D. Bayard and Kimhery Ann Elliot (1994), *“Reciprocity and Retaliation in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pp. 35-38.

2. 미국 공정무역 관련 규범

현행 미국법상 ‘공정무역’ 관련 규정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과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그리고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2000년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 act)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가. 1930년 관세법

1922년 관세법(tariff act of 1922)에 연원을 두고 있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의하여 대폭 강화되었다. 이 법안은 전통적으로 불공정행위로 간주되던 외국 수출자의 덤핑과 외국 정부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반덤핑조치(Sec. 731) 및 상계조치(Sec. 701)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먼저 상계조치는¹⁶⁾ ‘Tariff Act of 1930’의 [Title 7]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들’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미국은 만약 한 국가의 정부나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여하한 공공단체들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되게 하거나 또는 팔았거나 팔기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였거나 또 비록 미국과 생산에 필요한 보조금지급을 합의한 국가들일지라도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들로 인하여 미국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와 입게 될 손해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기업설립을 지연시키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러한 상품과 팔렸거나 팔릴 예정인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여하한 관세도 부과한다.

반덤핑관세부과¹⁷⁾에 관한 내용도 미국 내에서 팔리는 모든 외국 상품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이미 판매되어 미국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와 입게 될 손해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기업설립을 지연시키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러한 상품과 팔렸거나 팔릴 예정인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기타 여하한 관세도 부과한다. 즉,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하여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

15) 박중은, 송양호 (2017) “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p. 269-296.

16) Subtitle A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Sec. 701).

17) Subtitle B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Sec. 731).

나 보조금을 교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인 미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으로 수입국인 미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미국은 해당 산업의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 법조항에 의해 1930년 입법 초기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는 드물게 활용되었지만, 이후 1974년 통상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 등의 개정을 거치며 수입규제조치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나. 1974년 통상법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제301조가 속한 통상법 제3편의 제목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unfair trade practices)이다.¹⁸⁾ 이는 미국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이 최초로 미국 국내법 체계에 도입된 법안이 ‘1974년 통상법’임을 보여준다. 이 법안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미국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美무역대표부는 아래 요건에 따라 의무적 조치를 취하거나 재량적 조치를 취한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a) 조항으로 인하여 미국은 ①무역협정상 미국의 권리가 부인된 경우 ②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이 무역협정상 조항을 위반하거나 협정상 미국에 대한 혜택을 부인하는 경우, ③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 자국의 무역대표부가 의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b)조항으로 인하여 ①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고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 ②어떠한 조치가 적절한 경우,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재량적으로 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해당 국가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먼저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미국 상품 또는 서비스에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 수출 지원 정책 유무, 정부의 노동권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판단한다.

18) Title III (Relief from Unfair Trade Practices) / Chapter 1 (Enforcement of United States Rights under Trade Agreements and Responses to certain Foreign Trade Practices) / Sec. 301. (Actions BY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a) Mandatory Action(의무적 조치), (b) Discretionary Action(임의 조치), (c) Scope of Authority(권한의 범위), (d) Definitions and Special Rules(정의 및 특수 규칙).

다. 1988년 종합무역법

다음 <표 2-1>에서와 같이 슈퍼 301라고 알려진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1302조와 스페셜 301조라고 알려진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3조는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통상규제조치이다.

<표 2-1> USTR의 무역법 301조 관련 통상압박 수단

구분	근거법령	무역규제방안
일반 301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양자협상, 관세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혜택 유예 등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보호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2조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2조	

자료 : 박종은, 송양호 (2017), p. 284.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이다.

(1) 제1302조(슈퍼 301조)¹⁹⁾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1974년 통상법에 ‘외국의 우선 불공정 관행’(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을 지정하는 301조가 강화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 301조’로 불린다. 이 조항은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것을 의미하며, 1988년 종합무역법에 들어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 무역관행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그 발동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외국의 우선 불공정 관행’이란 이것이 폐지되었을 경우, 미국의 수출을 가장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무역장벽과 무역왜곡관행을 의미한다.

국가별 장벽보고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을 지정하여 조사·협의·보복조치 추진 등 한시적으로 발동된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연례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강력한 무역보복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19) PART 1 Enforcement of United States Rights under Trade Agreements and Responses to Foreign Trade Practices(Sec. 1302. Identification of trade liberalization priorities).

(2) 제1303조(스페셜 301조)²⁰⁾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대한 수정조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스페셜 301조’로 불린다. 이 조항은 1988년 신통상법에 들어있는 조항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관련 불공정 무역제도나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국 보복조치와 그 발동절차를 규정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나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을 파악하도록 지시 하고 무역보복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美무역대표부는 국별장벽보고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조사·협의·보복조치를 추진한다.

(3)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71조~제1381조²¹⁾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71조~제1381조는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교역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고 호혜적 시장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일명 ‘통신부문 스페셜 301조’로 불린다. 이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산 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상호호혜적인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교역 상대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한다.

라. 1988년 종합무역법과 1930년 관세법 제337조

미국의 1988년 종합무역법은 미국의 대외수지 불균형 시정, 미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한 301조, 수입규제조항인 201조, 지적재

20) PART 1 Enforcement of United States Rights under Trade Agreements and Responses to Foreign Trade Practices(Sec. 1303. Identification of countries that den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 PART 4 Telecommunications Trade(Sec.1371. Short title. / Sec.1372. Findings and purposes. / Sec.1373. Definitions. / Sec.1374. Investigation of foreign telecommunications trade barriers. / Sec.1375. Negotiations in response to investigation. / Sec.1376. Actions to be taken if no agreement obtained. / Sec.1377. Review of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by Trade Representative. / Sec.1378. Compensation authority. / Sec. 1379. Consultations. / Sec.1380. Submission of data; action to ensure compliance. / Sec.1381. Study on telecommunications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산권과 관련한 337조 등을 크게 강화한 보호무역 색채가 강한 법안이다. 1988년
 에 만들어진 이 법안은 ①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1974년 통상법 301조 강화, ② 수입피해의 구제를 규정한 동법 201조 개
 정, ③ 반덤핑규제 강화, ④ 저작권 특허권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337조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법 제337조(Tariff Act 337)²²⁾ 1922년 관세법(Tariff Act of 1922)에 연원
 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수입에서의 불공정 관행들’(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에 관한 내용들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1974년 통상법’에 의하여 이 조항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새로 명명된 국제통상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
 행하고,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며, 구제조치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한 점,
 ITC의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점, 엄격한 시한(time limit)을 설정한
 점, ITC가 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한 점, ITC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대통령
 이 검토할 수 있게 한 점, ITC가 공익을 고려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주요 개정내
 용으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본격적으로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입은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즉, 수입상품이, 미국 산업을 파괴하거
 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경우, 또는 이러한 산업의 설립을 지연시키는 경
 우, 또는 미국 내 상거래를 제약하거나 독점화하는 경우 ‘불공정 경쟁수단’(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 행위(unfair acts)로 간주한다. 미국의 지식재
 산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간주한다.

마. 2000년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 Act)

정식 명칭은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으로 2000년 10월 28일 발효되었다. 버드 상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이라고도 한다. 미국 세
 관이 벌어들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조설비 구입 및 연구 개발비, 중
 업원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 부여 등에 쓸 수 있도록 제조자측인 미국 내 생
 산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자 한국·유럽연합·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

22) TARIFF ACT OF 1930, §1337.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은 외국 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이중의 처벌이라며 이 법을 철폐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2년 9월 16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버드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결국 이 법안은 외국 정부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WTO에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이후 결국 2005년 폐지되었다.

바. 1988년 종합무역법 제2202조 및 2015년 무역집행 효율화 법제4421조

미국은 그동안 환율조작을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이의 혜택을 받은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으로 자신들과의 교역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교역상대국이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²³⁾ 이때,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교역상대국에 대한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구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²⁴⁾²⁷⁾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외에도 낮은 환경오염기준, 저임금 노동, 인위적 비관세장벽, 기술이전 강요, 국영기업의 독점행위,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을 통한 우회수출 등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한다. 1995년에 외교통상위원회는 국제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3)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Sec. 2202.

24) 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of 2015, Sec.4421.

제3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인 및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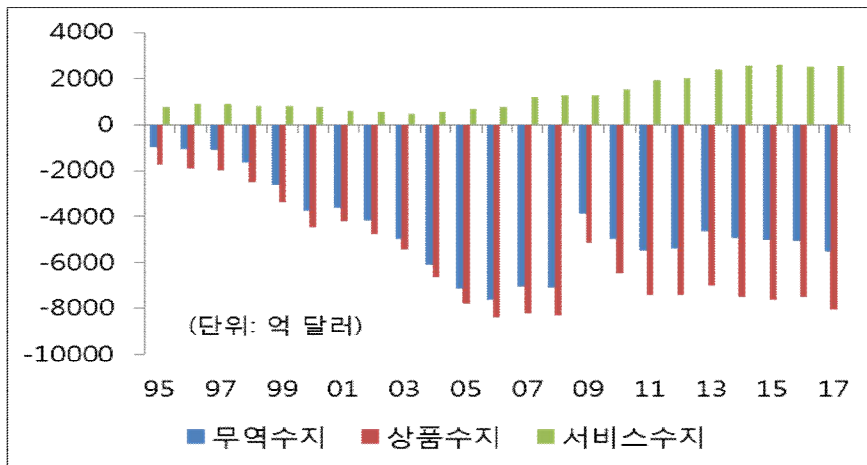
제1절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발생원인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가.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

미 상무부가 2018년 8월 3일 발표한 '미국 국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5,523억 달러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4.7% 수준의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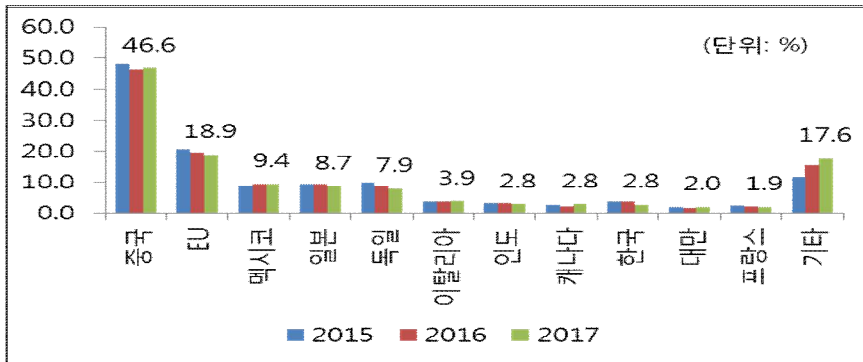


주 : BOP 및 계절변동조정 기준

자료 :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 Division, June, 2018

그림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 상품수지 적자의 46.6%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발생되었으며, 유럽연합(EU)과의 교역에서 18.9%, 멕시코, 일본 독일과의 교역에서 각각 9.4%, 8.7%, 7.9%로 나타난다.

<그림 3-2> 미국 교역국별 상품수지 적자 비중



자료 :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 Division, June, 2018

나. 미국 무역수지 적자 발생원인

2017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미국의 무역규모 확대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2015년, 2016년 무역규모는 다음 <표 3-1>에서와 같이 전년대비 각각 4.0%, 2.0% 감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017년 무역규모가 2011년 이후 최대치인 6.5% 증가하면서 5조 25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3-1> 미국의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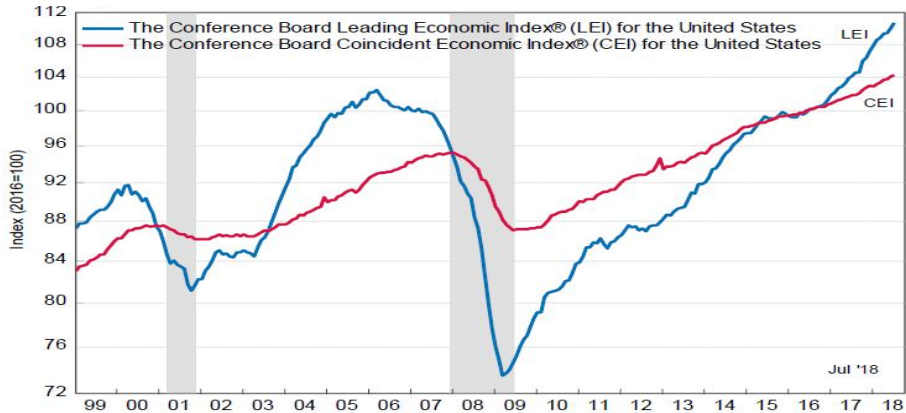
구분	무역규모			수출			수입		
	전체	상품	서비스	전체	상품	서비스	전체	상품	서비스
2015	50319 (-4.0)	37846 (-5.9)	12473 (2.1)	22667 (-4.6)	15114 (-7.6)	7553 (1.9)	27652 (-3.5)	22732 (-4.7)	4920 (2.3)
2016	49337 (-2.0)	36650 (-3.2)	12687 (1.7)	22158 (-2.2)	14570 (-3.6)	7589 (0.5)	27178 (-1.7)	22080 (-2.9)	5098 (3.6)
2017	52544 (6.5)	39143 (6.8)	13402 (5.6)	23511 (6.1)	15534 (6.6)	7977 (5.1)	29033 (6.8)	23609 (6.9)	5425 (6.4)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 Division, June, 2018

이와 같이 최근 미국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데는 미국경제 회복세에 따른 기업활동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에서 발표하고 있는 미국 경기선행지수(Leading Economic Index)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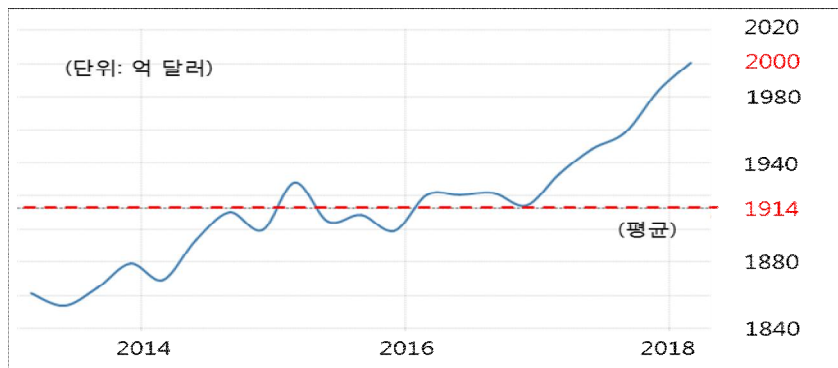
<그림 3-3>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August, 2018.

또한 다음 <그림 3-4>에서와 같이 미국의 제조업 GDP 역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 2,000억 달러규모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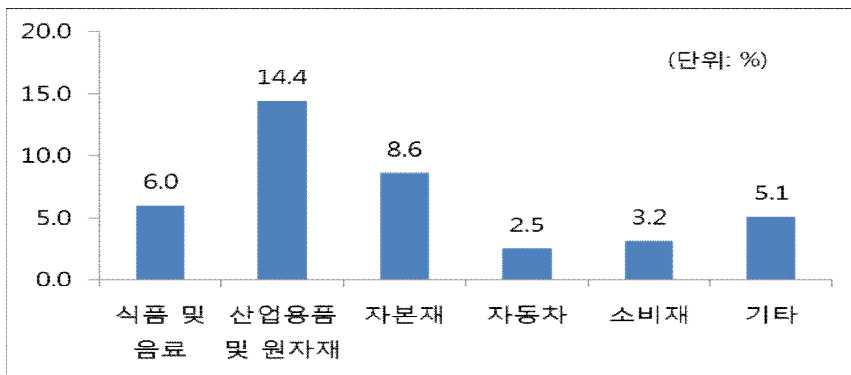
<그림 3-4> 미국의 제조업 GDP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June, 2018.

이와 같이 미국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미국 기업들은 생산을 위한 산업용품 및 원자재 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다. 2017년 미국 수입증가율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산업용품 및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이 2016년 대비 14.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는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행위 때문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림 3-5> 미국의 품목별 수입액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 Division, June, 2018.

다. 미국 무역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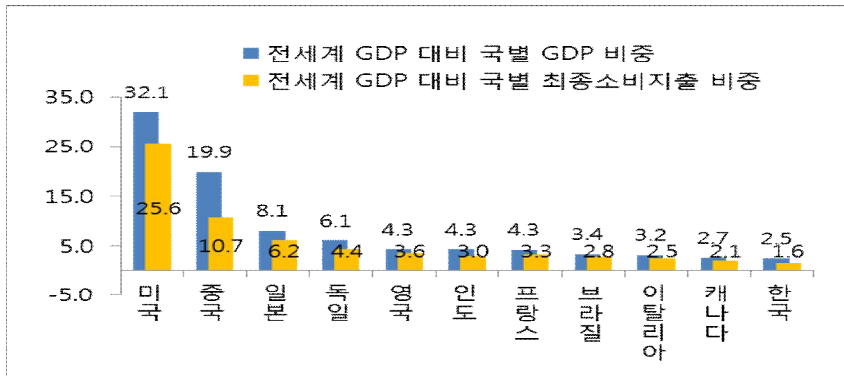
무역수지는 구조적으로 국가 간 경쟁력 차이나 불공정한 경쟁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계소비, 정부지출 또는 기업투자를 축소하여야 하지만, <그림 3-6>과 같이 미국은 GDP 대비 최종소비지출 비중이 25.6%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림3-7>과 같이 GDP 대비 총저축 비중도 총투자 비중을 초과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고, 최근 미국경제 호조세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자유무역협정 개정 등의 미시경제정책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상반기(1월-6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도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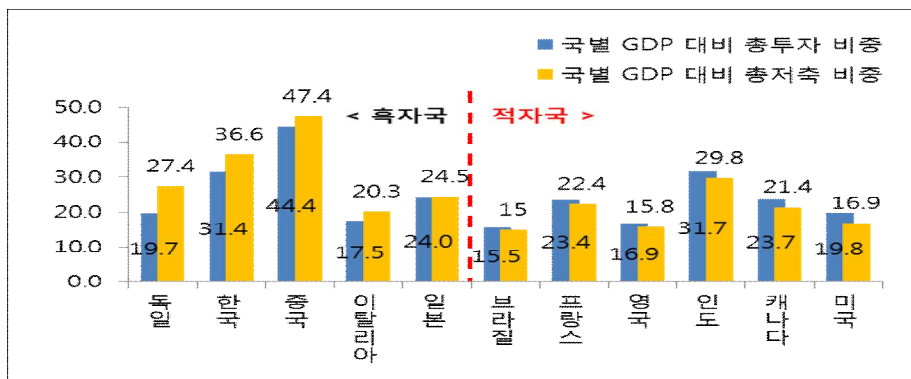
세를 보이고 있어, 2018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보호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약 5,8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6> GDP 대비 국별 최종소비지출 비중



자료: U.S. Manufactur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February 21, 2018.

<그림 3-7> 국별 GDP 대비 총저축, 총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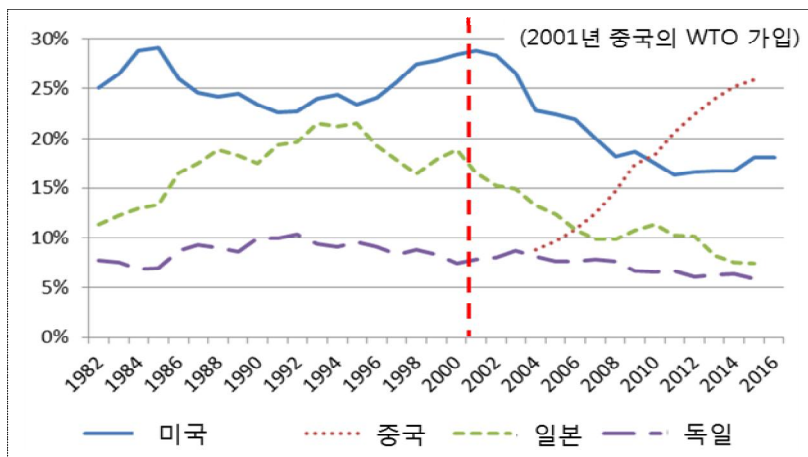
자료: U.S. Manufactur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February 21, 2018.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중국 제조업 고도화

제조업은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동력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 들어 금융 중심의 서비스업 중시 산업정책 실시로 미국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세계제조업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그림 1-8>에서와 같이 1980년 초 29%에서 2016년 18.1%까지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세계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26.0%를 초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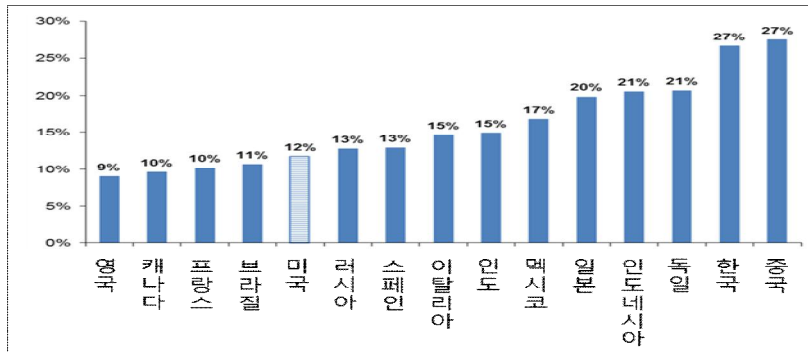
<그림 3-8> 국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U.S. Manufactur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February 21, 2018.

또한 미국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다음 <그림 3-9>에서와 같이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2016년에는 12%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3-9>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U.S. Manufactur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February 21, 2018.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통해, 중서부, 중산층 이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여 다음 선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관행의 결과라기보다는 글로벌가치사슬(GVCs)의 세분화로 제조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4월 3일 대중 관세부과 품목 1,300여개 목록을 공개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 2025)'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에 의해 최초 언급된 '중국제조 2025'는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혜택 등을 지원하여 제조업기반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녹색성장 등을 통해 중국 산업구조를 저기술·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기술·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산업 전략이다. 핵심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 70%까지 달성하면서,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신산업 전략은 미국의 고기술 제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부활정책과 정면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고, 수입공산품에 밀려 쇠락한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의 미·중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논쟁

2000년 이후 미국 서비스산업은 금융 및 기술서비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2015년 2,633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2016년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율이 5.4% 감소하면서 흑자 증가 행보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의 근거로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기업의 신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 3월 22일 작성한 ‘Special 301 Report’²⁵⁾에서는 “중국이 합작회사를 통한 기술이전 강요, 해외 특허·라이선스에 대한 차별 규정, 국가 주도의 해외투자로 기술 탈취, 해킹을 통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하여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중국 정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USTR(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March 22, 2018.

제2절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와 시행조치

1. 미·중 무역분쟁 전개과정

미·중 통상마찰은 2017년 8월 1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8년 3월 1일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부과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은 4월 2일 중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돈육 중 8개 품목 25%, 철강 등 120개 품목 15%)에 대하여 추가 관세부과를 발표시키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은 현실화되었다.

이에 미국은 2018년 4월 3일 대중 301조 관세부과 대상 1,300여개 품목을 공개하며 중국을 압박하였고, 중국도 4월 4일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 발표로 이에 대응하였으며, 미국은 다시 4월 5일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을 재차 압박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 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되자 2018년 5월 3일~4일 북경에서 미 재무장관, USTR 대표, 중국 부총리, 상무부장(장관) 등이 참가한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 측은 대중 무역적자가 중국의 보조금에 기반을 둔 불공정무역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제조 2025'전략산업에 대한 우대조치 수정과 2020년까지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의 소비규모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외국기업의 지분 비중 확대,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자 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체 협상은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2018년 5월 17일~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협상을 통해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ZTE(中興) 제재 완화를 검토하며, 중국은 대응 보복관세를 보류하고 수입관세 인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지식재산권 문제해소에 노력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27일 동 합의안을 번복하고 예정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시행계획을 전격 발표하였다.

2. 미·중 양국 관세부과 시행조치

양국은 2018년 6월 2일~3일 북경에서 제3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로 특별한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이에 미국은 6월 14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최종 승인하고, 6월 15일 대중 301조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하였으며,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초과관세 검토를 지시하였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정대로 대중 수입품 818개 품목(3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발효하였으며, 중국은 같은 날 대미 수입품 545개 품목(3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개시하였다. 이에 미국은 160억 달러 규모의 2차 추가관세부과(8월 23일 발효)를 예고하면서 맞대응하였다.

2018년 8월 22일~23일 워싱턴에서 4차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국은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미국은 예정대로 23일(미 현지시간)부로 중국산 수입품 279개 품목(16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의 추가관세가 발효시켰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 333개 품목(16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보복관세가 발효시켰다.

이에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0%~25% 추가관세를 발효시켰으며, 중국 또한 같은 5,207개 품목(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5%~25% 추가관세를 발효시켰다.

이로서 미국은 2017년 기준 중국산 상품수입액 5,170만 달러의 48.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중국은 미국산 상품수입액 1,497억 달러의 73.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마찰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에 중국이 보복조치를 강행하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2,670억 달러 규모)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2> 미·중 양국 추가 보복관세 발효 내역

발효일	발효국	총금액	품목수	관세율	부과 대상
2018.07.06	미국	340억 달러	818개	25%	무기화학품, 고무, 기계류, 전기기기,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광학기기 등
2018.07.06	중국	340억 달러	545개	25%	육류, 어패류, 낙농, 채소, 과일, 곡물, 제분, 채유, 음식료품, 담배, 철도차량 등
2018.08.23	미국	160억 달러	279개	25%	석유, 계면활성제, 화학공업생산물, 플라스틱, 고무, 철강, 알루미늄, 기계, 전기기기, 철도차량, 선박, 광학기기 등
2018.08.23	중국	160억 달러	333개	25%	광물성연료, 유기화학품, 계면활성제, 고무, 목재, 섬유류 일부, 철강, 비철금속, 전기기기, 철도차량, 선박, 광학기기 등
2018.09.24	미국	2,000억 달러	5745개	10%~25%	농수산물 일부, 광물성연료, 화장품, 섬유류 및 가죽제품 일부, 종이, 목재, 비철금속, 가구, 1, 2차 품목에서 제외된 세부품목 일체
2018.09.24	중국	600억 달러	5207개	5%~25%	무기화학물, 유기화학물, 의료용품, 비료, 염료, 정류, 계면활성제, 화약, 화공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 목재, 종이, 기계류, 전기기기,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광학기기, 가구, 산동물, 낙농, 채소, 커피, 제분, 채유, 지방, 식음료품, 수목 등

자료 : USTR Section 301 Investigations, 中国商务部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자료를 저자 요약

제3절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중국 측 입장

중국 국무원은 2018년 9월 24일 ‘중미 경제무역 마찰과 중국의 입장(關於中美經濟摩擦的事實與中方立場)’에 관한 백서를 통해 미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동 백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경제패권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경제질서 및 글로벌가치사슬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미중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백서의 각 장별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상호이익

중미 양자 간 무역 규모는 1979년 수교 이후 233배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수출의 8.4%를 차지하며 캐나다(18.3%), 멕시코(15.7%)에 이어 제3위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 수출의 18.9%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양자 간 무역은 매우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주로 자본재와 중간재이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 및 최종재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기계장비, 가구 및 침구 등이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역시 전기기기, 기계장비, 차량 및 부품이 3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양국 무역이 산업 내 무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고기술제품의 대부분 글로벌가치사슬 체계하에서 노동집약적 가공수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 지식재산권 도입은 2011년 대비 2배 증가한 34.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지식재산권 도입 비용의 25%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였다. 미중 무역 국가위원회(US-China Trade National

Committee)의 추산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미중 간 투자는 2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대미투자는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1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은 미국기업에게 많은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양 국가 교역확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고통을 주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지지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나.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

중미 경제무역관계는 규모와 범위가 크고 여러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제침략, 불공정 거래, 국가자본주의, 지식재산권 절도 등의 시각은 양 국의 근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마찰을 증가시킬 뿐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근본적으로 낮은 저축과 높은 소비 및 투자에 기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양자 간 무역구조에서 산업간 비교우위 차이에 의한 시장선택의 결과이며,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다국적기업의 국제생산분활의 결과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수출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노동집약적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의 59%는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또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무역통계 방식으로 인해 중미 무역적자는 매년 약 20% 정도 과대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불균형의 61%는 가공무역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집계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44.4%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최근 미국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규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강조하는 공정무역은 특정산업의 관세수준과 시장접근성이 미국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한다는 P2P(Peer-to-Peer)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 상호주의 추구는 국가발전의 단계를 차이를 고려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제기술이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에게 강제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정책과 관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기업 간 기술협력은 자발적 계약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쉘컴, GE 등 미국기업들은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국에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했고,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통해 거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20% 수준의 R&D 투자 확대의 결과이지 결코 미국의 주장과 같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WTO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200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중국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를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총 232건 중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1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부동산, 금융 및 서비스산업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위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공정무역, 글로벌가치사슬, 다자간 무역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중미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OECD의 제품시장 규제지표(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를 인용하며 미국(27위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정상적인 투자를 미국해외투자위원회(US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검토의 명분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을 통해 기술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자동차, 우주항공, 전기전자, 석유, 금융, 화학, 금속, 정보기술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불투명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생·검역, 기술장벽, 무역구제조치 등 다수의 비관세장벽을 중국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미국정부의 무역패권주의 행위

중국은 미국의 근시안적 보호무역주의 행위는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지위와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를 거치지 않고 자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및 301조(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 결과만으로 임의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또한 가장 많은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향적이고 대외 개방적인 ‘중국제조 2025’를 공격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미수출이 급증하는 기간에도 미국의 실업율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미국은 정책실패로 발생한 국내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여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미국 불공정행위의 세계 경제발전 폐해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패권주의가 다자간 무역질서 및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회복추세에 있는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2018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하여 무역마찰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면 글로벌가치사슬이 위축되고 신기술 확산 속도가 느려져 생산성과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간제와 원재료를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국가와 지역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여파는 미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중국의 대응 전략

중국정부는 동 백서를 통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미 무역마찰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2018년 6월 이후 ‘중국제조 2025’, ‘제조굴기’, ‘반도체굴기’ 등의 표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소비자 후생감소와 외자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자로 화장품 등 1449개 소비재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춘 바 있으며²⁶⁾, 11월 1일부터는 158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기계와 계측기 등 기계 전기설비 평균 관세율은 12.2%에서 8.8%로, 방직품과 건자재 등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11.5%에서 8.4%로, 종이제품 등 일부 자원성 상품과 초급 가공품 평균 관세율은 6.6%에서 5.4%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²⁷⁾ 또한 원산지 분류 및 평가, 원산지사전결정제도 등을 정비하여 통관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일련의 통관서비스를 개선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한편 2017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외자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재투자 대상을 정부가 지정한 권장투자 영역에서 투자금지 되지 않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²⁸⁾ 네거티브 리스트(투자금지 대상)가 아닌 경우 외자와 내자를 똑같이 관리해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를 중국의 중대 건설프로젝트에 포함시키거나 관련 산업 규획에 넣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조치에는 기업비용 절감, 다양화된 소비 수요 충족, 국민 생활 보호 및 산업고도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중국제조 2025’ 등 미행정부가 불공정 경쟁 수단으로 지목한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의 수혜 대상에 외자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중국 당국의 반박과 맥을 같이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은 양국 간 통상마찰이 화폐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26)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税委会公告 [2018] 4号

27)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关于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的公告, 税委会公告 [2018] 9号

28) 财政部 税务总局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 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 [2017] 88号

제4장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분석데이터 및 방법론

1. 세계투입산출표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산업연관표는 7개 정도이며,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되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s)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을 통한 생산분할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현재 WIOT 최신자료는 2012년(1995-2009), 2013년(1995-2011)에 이어 2016년 발표된 자료이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년간의 44개국 56개 산업부문의 투입-산출표로 구성되어 있다.²⁹⁾

<표 4-1> 세계투입산출표(WIOT)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산업 분류	분류 코드		
	WIOT(2016) 56부문	산업연관표 대분류	본 연구 29부문
농림수산물	R01-R03	01	K01
광산물	R04	02	K02
공산물	R05-R23	03-15	K03-K14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R24-R26	16-17	K15-K16
건설	R27	18	K17
서비스	R28-R56	19-30	K18-K29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별 매트릭스를 한국(KOR), 미국(USA), 중국(CHN), 유럽연합(EU), 일본(JPN), 대만(TWN), 캐나다(CAN), 멕시코(MEX), 기타국가(ROW)의 9개 나라로 재조합하였으며, WIOT(2016)의 56개 산업부문을 위 <표 4-1>과 같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의 대분류 30개 부문과 일치시켜 총 29개

29) WIOT의 구조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이제민 (2017), “세계산업연관표(WIOT)의 구조와 이해”, 「국제경제리뷰」, 통권 제27호, 한국은행, pp. 46-70 참조.

부분으로 통합·재분류하였다.

2. 총수출의 분해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방식을 이용하면 총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가운데 해외 최종수요로 흡수되는 부가가치(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중간재 수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이출입이나 이중 계산되는 부가가치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³⁰⁾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WWZ(2013) 방식은 전방연계와 후방연계를 함께 고려하여 국가-산업 수준에서 총수출을 16가지 요소로 완전 분해하여 교역상대국, 산업별로도 정합성을 확보한 방법론이다.

가. 국내부가가치(DVA)

국내부가가치(DVA)는 기준 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기준국가(s)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며, 이는 다시 총 5개의 하부요소로 세분된다.

먼저 기준국가(s)의 직접수입국(r)에 대한 부가가치수출은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식 4-1)에서 #는 두 개의 벡터가 각 원소별로 곱셈(element-wise product)된 것을 의미한다. L_{sr} 은 지역-레온티에프 역행렬(local leontief inverse matrix)이며 $L_{sr} = (I_{N \times N} - A_{sr})^{-1}$ 로 정의된다. 따라서 VT_s^r 은 $N \times 1$ 의 차원을 가지게 되며 이때 각 원소들은 s국의 해당 산업이 r국에 수출한 양을 의미하게 된다.

$$DVA_s^r = (V^s B^{ss})^{\#} Y^{sr} + (V^s L^{ss})^{\#} (A^{sr} B^{rr} Y^{rr}) + (V^s L^{ss})^{\#} (A^{sr} B^{rt} Y^{tt}) \quad (\text{식 4-1}) \\ + (V^s L^{ss})^{\#} (A^{sr} B^{rr} Y^{rt}) + (V^s L^{ss})^{\#} (A^{sr} B^{rt} Y^{tr})$$

여기서, A : 중간재 계수 행렬

B : 레온티에프 역함수 $[(I - A)^{-1}]$, B^{sr} 은 r국의 최종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s국의 산출량

V : 중간재 계수행렬, Y^{sr} : s국에서 생산되고 r국에서 소비된 최종재

나.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

30) 윤우진 (2016), “글로벌가치사슬과 한국산업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16-797, 산업연구원, p. 99.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는 기준국가의 수출에 체화된 국내부가가치가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을 통하여 기준국가로 재수입(shipped back)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DVA에서 RDV를 제외한 부분이 기준국가의 순부가가치수출이 된다. RDV는 다시 총 3개의 하부요소로 세분된다.

$$RDV_s^r = (V^s L^{ss})^T \# (A^{sr} B^{rr} Y^{rs}) + (V^s L^{ss})^T \# (A^{sr} B^{rt} Y^{ts}) + (V^s L^{ss})^T \# (A^{sr} B^{rs} Y^{ss}) \quad (\text{식 4-2})$$

다. 외국부가가치(FVA)

외국부가가치(FVA)는 기준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기여분이다. 즉 수출을 위해 수입된 중간재 또는 최종재에 내재된 직접수입국 또는 제3국(t)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외국부가가치(FVA_FIN)과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외국부가가치(FVA_INT) 중 직접수입국과 제3국의 기여분의 총 4가지 요소로 세분된다.

$$FVA_s^r = (V^r B^{rs})^T \# Y^{sr} + (V^t B^{ts})^T \# Y^{sr} + (V^r B^{rs})^T \# (A^{rs} L^{ss} Y^{ss}) + (V^t B^{ts})^T \# (A^{sr} L^{rr} Y^{rr}) \quad (\text{식 4-3})$$

라. 순수 중복 계산분(PDC)

총수출의 중복계산 문제는 기준국가에서 수출된 중간재가 다시 되돌아와 기준국가에서 다시 중간재나 최종재로 가공되어 수출된 경우에 발생된다(DDC). 이 경우 최초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와 중간재 및 최종재수출에서의 국내부가가치가 중복계산 되는 것이다. 또한 직접수입국과 제3국의 수출에서도 같은 개념의 중복계산이 발생된다(FDC).

$$PDC_s^r = (V^s L^{ss})^T \# [A^{sr} B^{rs} (Y^{sr} + Y^{st})] + [V^s (B^{ss} - L^{ss})]^T \# (A^{sr} X^r) + (V^r B^{rs})^T \# (A^{sr} L^{rr} E^{r*}) + (V^t B^{ts})^T \# (A^{sr} L^{rr} E^{r*}) \quad (\text{식 4-4})$$

3. 총생산과 최종재생산의 분해

가. 총생산(GDP)의 분해

WWYZ(2016)는 GVCs의 측정을 위하여 국가-산업별 국내총생산(전방연계 방식) 및 최종재생산(후방연계 방식)의 분해를 위한 수학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전방연계에 의한 국가-산업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분해는 (식 4-5)와 같이 (1) 기준국가(s)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종재생산에 투입된 기준국가(s)의 국내부가가치(Y_D), (2) 직접수입국(r)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출용 최종재생산에 투입된 기준국가(s)의 국내부가가치(V_RT), (3a) 직접수입국(r)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출용 중간재생산에 투입된 기준국가(s)의 국내부가가치(Y_GVC_R), (3b) 기준국가(s)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종재생산에 투입된 기준국가(s)의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Y_GVC_D), (3c) 직접수입국(r)의 제3국(t)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출용 최종재생산 또는 중간재 재수출에 내재된 기준국가(s)의 국내부가가치(Y_GVC_F)의 5가지 요소로 분해된다.

$$\begin{aligned}
 (Va^s)' &= \hat{V}^s X^s = \underbrace{\hat{V}^s L^{ss} Y^{ss}}_{V_D} + \underbrace{\hat{V}^s L^{ss} \sum_{r \neq s}^G Y^{sr}}_{V_RT} + \underbrace{\hat{V}^s L^{ss} \sum_{r \neq s}^G A^{sr} \sum_u^G B^{ru} \sum_t^G Y^{ut}}_{V_GVC} \\
 &= \underbrace{\hat{V}^s L^{ss} Y^{ss}}_{V_D} + \underbrace{\hat{V}^s L^{ss} \sum_{r \neq s}^G Y^{sr}}_{V_RT} + \underbrace{\hat{V}^s L^{ss} \sum_{r \neq s}^G A^{sr} L^{rr} Y^{rr}}_{V_GVC_R} \\
 &+ \underbrace{\hat{V}^s L^{ss} \sum_{r \neq s}^G A^{sr} \sum_u^G B^{ru} Y^{us}}_{V_GVC_D} + \underbrace{\hat{V}^s L^{ss} \sum_{r \neq s}^G A^{sr} (\sum_u^G B^{ru} \sum_{t \neq s}^G Y^{ut} - L^{rr} Y^{rr})}_{V_GVC_F}
 \end{aligned}$$

(식 4-5)

여기서 기준국가(s)의 중간재수출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V_GVC)는 국제수지분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준국가의 GDP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최종재생산의 분해

WWYZ(2016)의 후방연계에 의한 국가-산업의 최종재생산(production of final goods and service) 분해는 (식 4-6)과 같이 (1) 기준국가(s)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부가가치 투입·최종재생산(Y_D), (2) 직접수입국(r) 최종수요(s

의 r에 대한 최종재 수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부가가치 투입·최종재생산·수출 (Y_RT), (3a) 기준국가(s)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수입국(r)으로부터의 중간재수입·최종재생산(Y_GVC_R), (3b) 기준국가(s) 최종수요(또는 수출)를 충족시키기 위한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 투입·최종재생산(Y_GVC_D), (3c) 기준국가(s) 최종수요(또는 수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3국(t)으로부터의 중간재수입·최종재생산(Y_GVC_F)의 5가지 요소로 분해된다.

$$\begin{aligned}
 Y^s = \sum_r^G Y^{sr} = & \underbrace{V^s L^{ss} \hat{Y}^{ss}}_{Y_D} + \underbrace{V^s L^{ss} \sum_{s \neq r}^G \hat{Y}^{sr}}_{Y_{RT}} \quad (식 4-6) \\
 & + \underbrace{\sum_{r \neq s}^G V^r L^{rr} A^{rs} L^{ss} \hat{Y}^{ss}}_{Y_{GVC_R}} + \underbrace{V^s \sum_{s \neq r}^G A^{rs} L^{ss} \sum_t^G Y^{st}}_{Y_{GVC_D}} \\
 & + \underbrace{\left(\sum_{r \neq s}^G V^r \sum_{u \neq r}^G B^{ru} A^{us} L^{ss} \sum_t^G \hat{Y}^{st} - \sum_{r \neq s}^G V^r L^{rr} A^{rs} L^{ss} \hat{Y}^{ss} \right)}_{Y_{GVC_F}}
 \end{aligned}$$

따라서 후방연계방식의 최종재생산 분해는 기준국가-산업의 최종재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국경 간 생산분할 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4. 부가가치수출(VAX_f)

Johnson and Noguera(2012)에 의해 제시된 부가가치수출(VAX) 지수는 국제수직분업구조에서 일 국가의 총수출에서 기준국가의 국내부가가치(DVA)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전방연계방식으로 계산되는 VAX는 DVA와 마찬가지로 최종재나 중간재로 수출되어 해외 최종수요에 흡수되는 국내부가가치를 의미하나 포함되는 부가가치가 서로 다르다. DVA는 기준국가의 다른 산업에서 투입된 부가가치와 해당 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합쳐져서 해당 산업의 수출을 통해 직접수입국으로 이출되는 국내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반면에 VAX는 기준국가의 해당 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해당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의 수출을 통해 직접수입국으로 이출되는 국내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제2절 부가가치기준 대미 무역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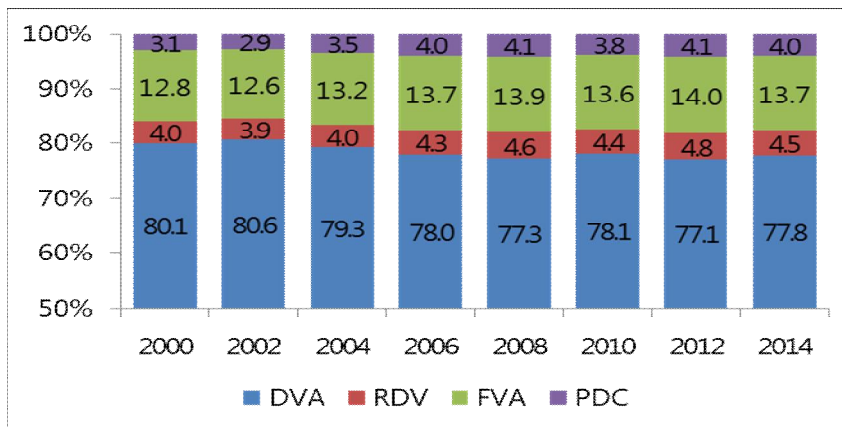
1.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교역구조

가. 세계 총수출의 부가가치기준 비중 추이

GVCs 활동을 가능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수출에서의 중간재 비중은 2000년 59.2%에서 2012년 64.2%로 최고점을 기록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GVCs 체계의 약화로 2014년 63.8%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GVCs 정체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갈리고 있는 상황이나, 1990년대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어진 초글로벌화(hyper-globalization)로 인한 GVCs 확대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³¹⁾

다음 <그림 4-1>은 WWZ(2013) 총수출분해 방법을 통해 세계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교역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4년 기준 세계 총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은 77.8%,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 비중은 4.5%, 외국 부가가치(FVA) 비중은 13.7%, 순수중본계산분(PDC) 비중은 4.0%로 나타난다.

<그림 4-1> 세계 부가가치 요소별 비중 추이



자료 : WIOT (2016) 자료를 이용하여 WWZ(2013) 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중간재 교역비중이 감소하면서 DVA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 FVA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되면서 GVCs의 정체 현상이 뚜렷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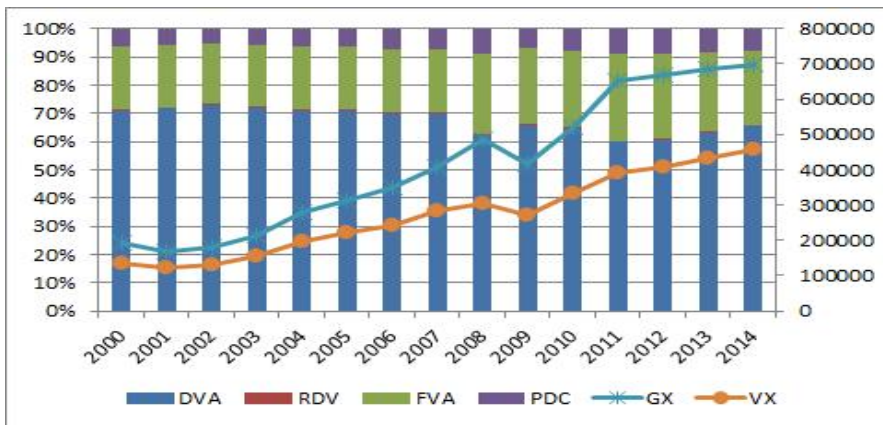
31) 윤우진 (2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한국 산업의 대응”,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7호, 산업연구원, p. 3.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세계 생산 및 무역의 수직분업구조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한국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비중 추이

국별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4-2>와 같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한국은 DVA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국 개방형 경제인 한국이 GVCs 결합도를 높이며 해외에서 보다 더 많은 중간재를 공급받아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출의 국내경제 고용 및 소득 창출률이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한국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비중 추이



자료 : WIOT (2016) 자료를 이용하여 WWZ(2013) 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또한 2014년 기준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수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출에 체화된 해외부가가치(FVA) 비중은 공산품과 건설이 각각 29.8%, 24.8%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광산품, 서비스 및 농림수산품은 각각 10.8%, 13.0%, 1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산업 부문별로는 공산품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의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차 금속제품(29.7%), 운송장비(29.1%), 화학제품

(28.0%), 금속제품(27.5%), 기계 및 장비(26.9%), 전기 및 전자기기(25.4%) 부문 순으로 FVA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16.6%), 문화 및 기타서비스(15.5%),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13.2%) 부문 순으로 FVA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외부가가치 비중과 금액이 모두 큰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 화학제품 및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부문 등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외부충격을 크게 받는다고 말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기준 대미 무역수지

가. 주요국별 대미 무역수지

다음 <표 4-2>는 2014년 기준 국별 대미 총량기준 무역수지와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4-2> 국별 대미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2014년)

(단위 : 억 달러, %)

구분	전체산업			공산품			서비스		
	TEXP_b	VAX_b	증감율	TEXP_b	VAX_b	증감율	TEXP_b	VAX_b	증감율
중국	2352.6	2080.7	88.4	2634.7	1248.5	47.4	-173.0	416.7	흑자 전환
한국	344.5	326.7	94.8	396.6	280.8	70.8	-19.0	55.2	흑자 전환
일본	575.5	456.9	79.4	740.7	449.5	60.7	-93.1	65.6	흑자 전환
대만	176.4	174.9	99.2	160.4	145.0	90.4	28.7	35.9	125.1
유럽연합	260.1	721.3	277.3	1341.5	751.7	56.0	-998.0	-60.0	6.0
캐나다	585.5	457.5	78.1	-307.9	-172.7	56.1	70.6	62.4	88.4
멕시코	887.8	610.3	68.7	517.3	238.1	46.0	81.3	142.0	1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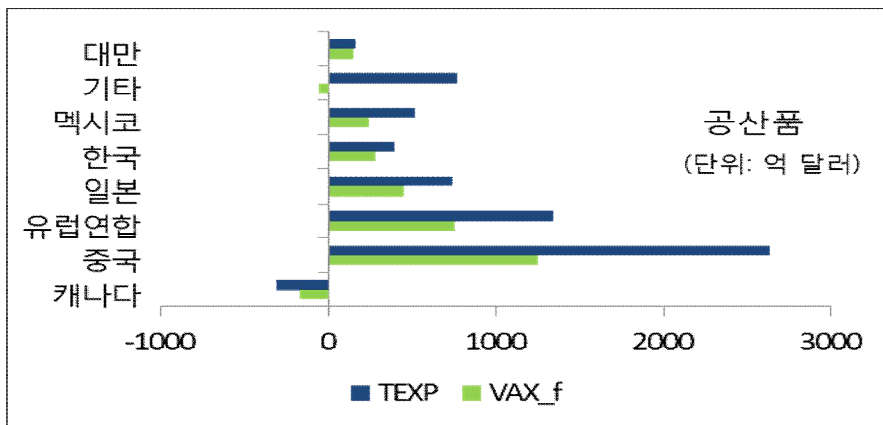
주 : TEXP_b는 총량기준 무역수지, VAX_b는 전방연계방식으로 계산된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자료 : WIOT (2016) 자료를 이용하여 JN(2012) 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를 부가가치기준으로 집계하면 공산품은 47.4% 수준인 1,249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173억 달러 적자에서 417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부가가치

기준 대비 무역수지 흑자는 총량기준 대비 277.3%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총량기준 대비 56.0%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998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4-3>은 2014년 기준 주요국의 대비 공산품 무역수지 현황을 도식화한 결과이다.

<그림 4-3> 국별 대비 공산품 무역수지(2014년)



자료 : WIOT (2016) 자료를 이용하여 JN(2012) 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나. 한국의 산업별 대비 무역수지

다음 <표 4-3>는 2014년 기준 한국의 대비 총량기준 무역수지와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한국의 총량기준 대비 수출은 783.4억 달러, 수입은 438.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4.5억 달러 흑자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부가가치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산품 대비 무역흑자는 총량기준 대비 70.8% 수준인 280.8억 달러로 감소하며, 농림수산물 및 광산품의 적자액도 감소되며 서비스수지는 적자에서 55.2억 달러 흑자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비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되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중간재와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이중계상분 역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2014년)

(단위 : 억 달러, %)

구분	TEXP_b	VAX_b	증감율
전체산업	344.5	326.7	94.8
농림수산물	-24.3	-13.1	53.9
광산품	-9.1	-12.0	132.3
공산품	396.6	280.8	70.8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0.3	15.4	4862.4
건설	0.1	0.4	347.4
서비스	-19.1	55.2	후자전환

주 : TEXP_b는 총량기준 무역수지, VAX_b는 전방연계방식으로 계산된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자료 : WIOT (2016) 자료를 이용하여 JN(2012) 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3. 대미 총수출의 최종수요지 분석

가. 총수출의 최종수요지 개념

총수출의 최종수요지 개념은 기준국가(s)의 총수출 중 양자간 교역 또는 다자간 무역경로를 통하여 직접교역국(r)의 최종수요에 직접 흡수되는 국내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하며, 이는 기준국가(s)의 직접교역국(r)에 대한 부가가치수출(VAX)과 같은 개념이 된다.

따라서 일국의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를 추적하면 수출의 최종수요지(귀착지), 즉 각 국가가 발생시킨 부가가치가 무역을 통하여 어느 국가-산업의 최종수요로 흡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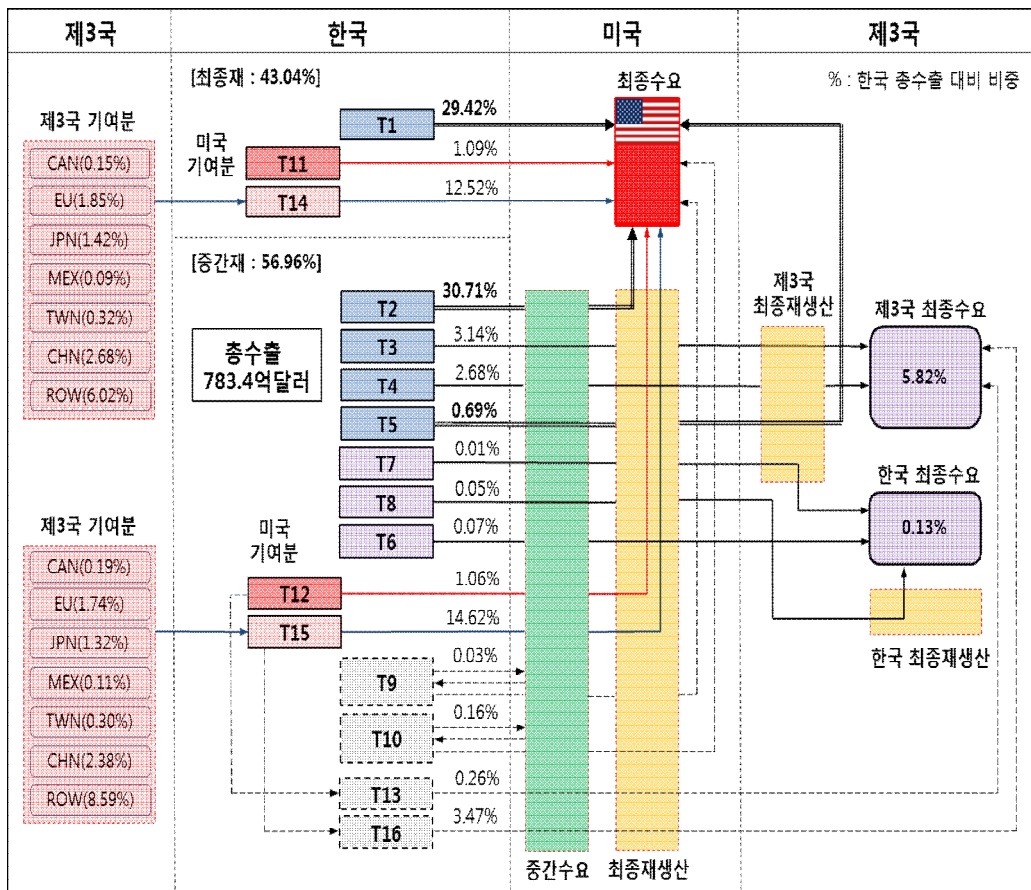
나. 한국 대미 총수출의 최종수요지

201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총량기준 수출액은 2000년 대비 82.5% 증가한 783.4억 달러이다. 한국의 대미 총수출 중 미국을 최종수요지(귀착지)로 하는 국내부가가치(DVA) 비율은 2000년 대비 5.8%p 감소한 60.8%로 분석된다. 반면 동 기간

중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된 중간재 비중은 1.2%p 증가한 5.8%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기준 미국을 최종수요지로 하는 중간재에 체화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총수출액의 31.4%로 2000년 대비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4년 한국의 대미 총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최종재 비중은 감소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다음 <그림 4-4>는 한국의 대미 총량기준 수출을 WWZ(2013) 방식을 이용하여 한국 대미 총수출의 최종수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4> 한국 대미 총수출의 부가가치 요소별 분해



자료 : WIOT (2016)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WWZ(2013) 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제3절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은 외생변수인 최종수요(소비, 투자, 최종재 생산 및 수출)의 변화로 인하여 어느 국가-산업의 산출량이나 부가가치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WYZ(2016)의 후방연계방식에 의한 최종재생산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세계 최종수요 감소가 한국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최종수요가 1.0% 감소한다는 가정하에서 WWYZ(2016) 최종재생산 분해방법(후방연계)을 이용하여 국가별 산업별 최종재 생산을 위한 수입중간재 의존도를 계산하여 한국의 산업별 최종재 및 중간재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1. 최종재생산의 국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다음 <표 4-4>는 국별 국내수요와 해외수요(수출)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종재생산의 부가가치 투입구조를 국내부가가치(DVA)와 해외부가가치(FVA)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2014년 기준 세계 총생산액은 약 20조 7천억 달러 규모이며, EU가 전 세계 최종재생산의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23.3%, 중국 14.0%, 일본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전 세계 총생산의 1.8%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별 최종재생산의 해외부가가치 투입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과 한국이 각각 22.8%,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EU의 최종재생산의 해외부가가치 투입비율은 6.7%, 8.3%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국별 최종재생산의 한국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비교 분석해보면, 대만과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각각 1.1%, 0.7%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EU, 캐나다의 대 한국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0.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4> 국별 최종재생산의 수입 중간재 투입 구조

(단위 : 억 달러, %)

구분	FGY	DVA (%)	FVA (%)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								
				CAN	CHN	EUU	JPN	KOR	MEX	ROW	TWN	USA
캐나다	16,429	84.8	15.2	0.0	1.3	2.2	0.4	0.2	0.4	3.1	0.2	7.4
중국	105,611	89.2	10.8	0.1	0.0	1.5	0.7	0.7	0.1	6.5	0.5	0.7
EU	171,924	91.7	8.3	0.2	1.0	0.0	0.2	0.2	0.1	5.0	0.1	1.6
일본	46,122	89.4	10.6	0.2	1.2	1.1	0.0	0.4	0.1	6.5	0.2	0.9
한국	13,753	79.3	20.7	0.2	3.5	2.6	1.8	0.0	0.1	10.2	0.4	1.8
멕시코	12,919	84.5	15.5	0.6	1.4	1.9	0.7	0.5	0.0	3.1	0.2	7.2
대만	4,778	77.2	22.8	0.3	3.0	2.3	2.8	1.1	0.1	11.7	0.0	1.5
미국	175,461	93.3	6.7	1.0	0.7	1.4	0.3	0.2	0.5	2.5	0.1	0.0
기타국	207,476	88.7	11.3	0.3	2.5	4.9	0.7	0.5	0.1	0.0	0.3	1.9

주 : FGY(최종재생산액), DVA(최종재생산을 위해 투입된 국내부가가치), FVA(최종재생산을 위해 투입된 외국부가가치)

자료 : WIOT (2016)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WWYZ(2016) 후방연계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2. 최종수요 감소의 중간재 수출 감소 효과

가. 국별 중간재 수출 감소효과

다음 <표 4-5>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별 최종재생산 감소가 다자간 무역경로를 통해 세계 중간재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중간재 수출 감소액은 총 740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별로는 유럽연합의 중간재 수출감소액이 157.8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 103.9억 달러, 중국 97.3억 달러, 일본 36.6억 달러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의 중간재 수출감소액은 27.5억 달러로 분석되었다.

<표 4-5> 세계 최종수요 감소의 국별 중간재수출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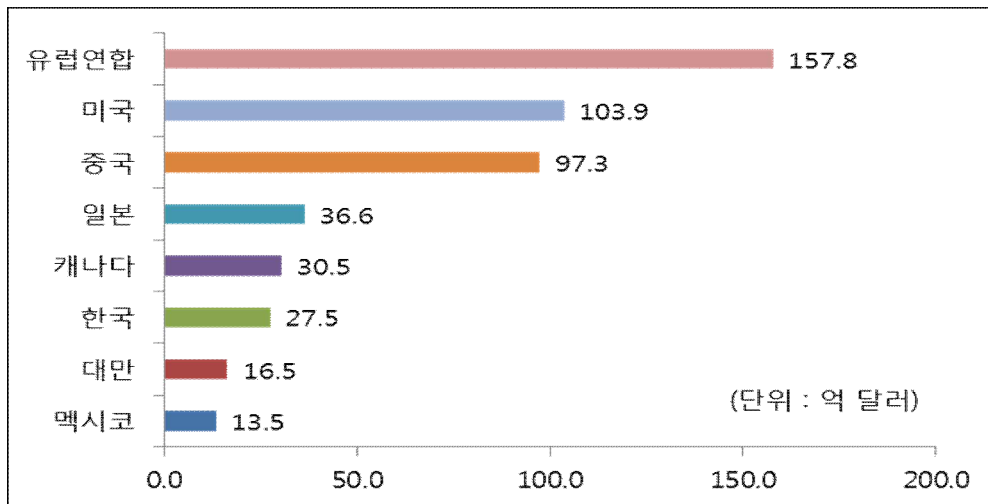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구분	감소율	감소액
EU	0.0209	157.8
미국	0.0138	103.9
중국	0.0129	97.3
일본	0.0048	36.6
캐나다	0.0040	30.5
한국	0.0037	27.5
대만	0.0022	16.5
멕시코	0.0018	13.5
기타국	0.0340	256.7

자료 : WIOT (2016)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WWYZ(2016) 후방연계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다음 <그림 4-5>는 세계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국별 중간재 수출 감소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5> 세계 최종수요 감소의 국별 중간재수출 감소효과



주 : 세계 최종수요 1.0% 감소를 가정
 자료 : WIOT (2016) 자료를 이용하여 후방연계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나. 한국의 산업별 중간재 수출 감소효과

다음 <표 4-6>은 세계 최종수요 감소가 한국의 산업별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후방연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4-6> 한국의 산업별 중간재수출 감소효과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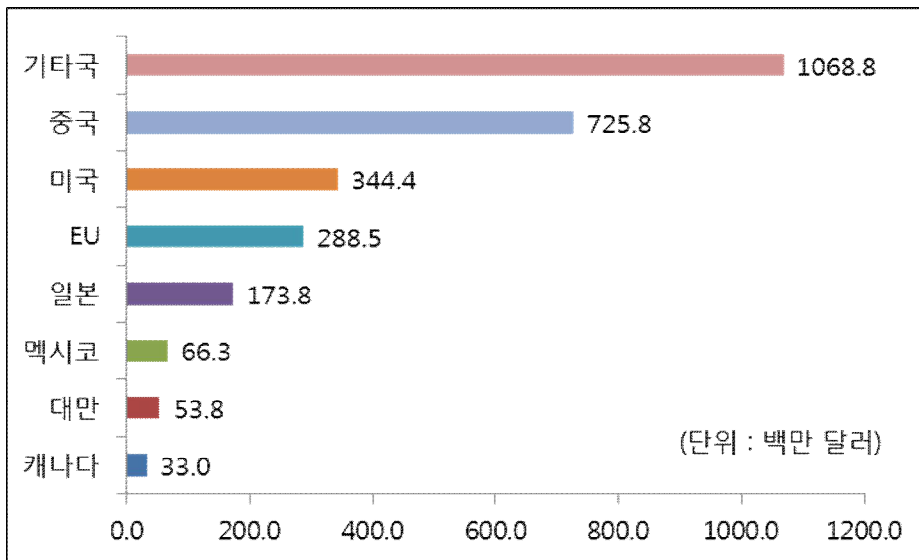
구분	CAN	CHN	EU	JPN	MEX	ROW	TWN	USA	합계
전체산업	33.0	725.8	288.5	173.8	66.3	1068.8	53.8	344.4	2754.3
농림수산물	0.3	11.8	3.1	1.0	0.4	30.4	0.7	1.5	49.3
광산물	0.3	0.8	0.2	0.0	0.1	5.3	0.0	2.4	9.1
공산물	10.4	371.7	138.0	69.1	39.2	399.6	28.4	127.9	1184.2
음식료품	0.9	18.8	12.4	6.4	3.0	46.0	1.3	13.1	102.0
섬유 및 가죽제품	0.3	29.1	6.8	0.3	1.0	78.1	1.1	2.5	119.3
목재, 종이 및 인쇄	0.1	1.1	1.4	0.2	0.2	5.6	0.1	2.3	11.0
석탄 및 석유제품	0.4	2.2	6.6	1.4	0.4	10.4	0.4	4.7	26.3
화학제품	0.5	10.4	12.1	3.4	1.6	34.2	2.5	14.9	79.5
비금속광물제품	0.0	0.8	0.7	0.1	0.1	2.1	0.0	0.4	4.3
1차 금속제품	0.2	1.4	0.6	0.6	0.0	6.9	-0.1	0.4	9.9
금속제품	0.2	6.0	3.4	4.5	0.5	7.0	0.9	2.5	25.0
기계 및 장비	0.7	55.0	16.5	11.8	1.2	29.7	5.3	14.7	134.9
전기 및 전자기기	1.2	164.1	28.2	18.9	18.1	87.4	13.5	12.4	343.7
운송장비	4.6	77.0	41.3	20.7	11.5	78.9	2.7	53.6	290.1
기타 제조업 제품	1.4	5.7	8.1	0.9	1.6	13.3	0.6	6.5	38.1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0.2	5.7	6.9	2.3	0.5	26.2	0.4	1.8	43.9
전력, 가스 및 증기	0.2	4.5	5.2	2.1	0.5	20.1	0.3	1.9	34.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0.0	1.2	1.7	0.2	0.1	6.1	0.1	-0.1	9.2
건설	8.0	191.3	30.3	31.7	6.8	228.1	7.4	26.2	529.8
서비스	13.9	144.5	109.9	69.7	19.2	379.2	17.0	184.6	938.0
도소매	3.4	11.7	21.8	13.7	3.4	57.2	2.8	27.4	141.5
운송	0.6	6.0	7.8	4.6	3.3	60.3	2.1	6.2	90.9
음식점 및 숙박	0.5	5.1	6.4	5.0	0.6	21.0	1.2	9.8	49.7
정보통신 및 방송	1.1	17.5	12.4	3.7	2.3	28.0	1.3	23.1	89.3
금융 및 보험	0.5	2.4	4.8	1.9	2.6	15.7	0.7	7.4	36.0
부동산 및 임대	0.9	4.0	6.8	4.2		13.1	1.3	9.6	39.8
전문, 과학 및 기술	0.2	8.1	5.0	0.8	0.1	20.9	1.4	8.4	44.9
사업지원	0.4	3.1	2.0	0.1	1.2	6.5	0.2	3.0	16.4
공공행정 및 국방	3.5	23.7	13.3	12.4	3.2	50.2	1.9	50.1	158.2
교육	0.6	19.5	4.5	2.0	0.9	33.1	0.9	3.2	64.6
보건 및 사회복지	1.8	29.4	18.4	17.0	1.1	45.4	1.7	26.2	141.0
문화 및 기타	0.5	13.9	6.7	4.2	0.5	27.9	1.6	10.3	65.6

자료 : WIOT (2016)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WWYZ(2016) 후방연계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1) 국별 중간재 수출 감소효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최종수요 감소가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한국 중간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최종재생산 1.0% 감소를 가정 시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은 약 7.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미국 3.4억 달러, 유럽연합 2.9억 달러, 일본 1.7억 달러 순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 4-6>는 세계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의 국별 중간재 수출 감소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6> 국별 한국 중간재수출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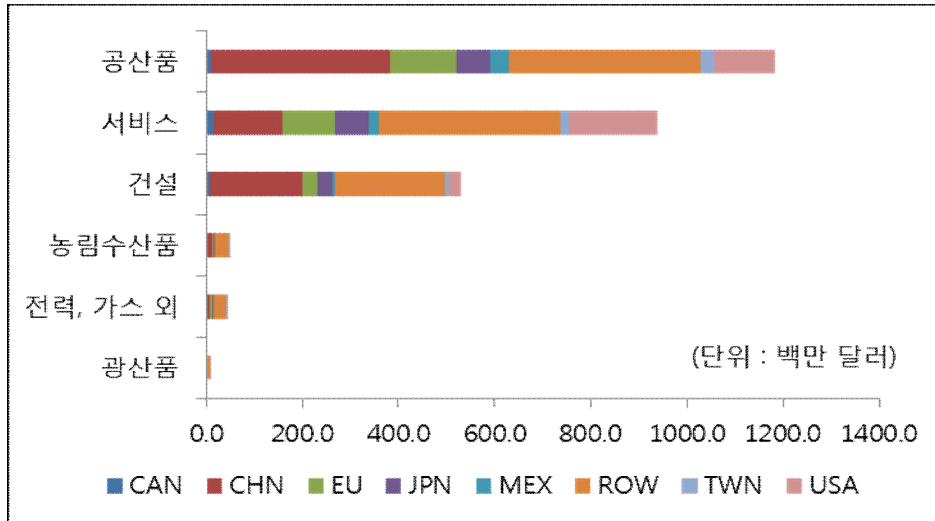
주 : 세계 최종수요 1.0% 감소를 가정
 자료 : WIOT(2016) 자료를 이용하여 후방연계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2) 한국 산업별 중간재 수출 감소효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최종수요 감소가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공산품으로 총 1,184.2백만 달러의 중간재 수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938.0백만 달러), 건설(529.8백만 달러), 농림수산물(49.3백만 달러), 전력, 가스 외(43.9백만 달러), 광산

품(9.1백만 달러) 순으로 중간재 수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7> 산업별 한국 중간재수출 감소효과



주 : 세계 최종수요 1.0% 감소를 가정
 자료 : WIOT(2016) 자료를 이용하여 후방연계방식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공산품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343.7백만 달러), 운송장비(290.1백만 달러), 기계 및 장비(134.9백만 달러), 섬유 및 가죽제품(119.3백만 달러) 순으로 중간재 수출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158.2백만 달러), 도소매서비스(141.5백만 달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1.5백만 달러), 운송서비스(90.9백만 달러),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89.3백만 달러) 순으로 수출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 결 론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통하여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세계 총수요 감소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WZ(2013) 총수출 분해방식으로 한국 총수출의 무역구조와 최종수요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은 낮고 외국부가가치(FVA)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그간 GVCs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수출의 고용 및 소득창출률이 낮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임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의 대미 한국의 대미 총수출 중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된 중간재 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WWYZ(2016) 최종재생산 분해방식(후방연계)으로 세계 총수요 감소가 세계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계 중간재 수출 감소액은 총 740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별로는 유럽연합의 중간재 수출감소액이 157.8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 103.9억 달러, 중국 97.3억 달러, 일본 36.6억 달러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의 중간재 수출감소액은 27.5억 달러로 분석되었다.

넷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최종수요 감소가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중간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최종재생산 1.0% 감소를 가정 시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은 약 7.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미국 3.4억 달러, 유럽연합 2.9억 달러, 일본 1.7억 달러 순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세계 최종수요 감소가 한국 중간재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공산품으로 총 1,184.2백만 달러의 중간재 수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938.0백만 달러), 건설(529.8백만 달러), 농림수산물(49.3백만 달러), 전력, 가스 외(43.9백만 달러), 광산물(9.1백만 달러) 순으로 중간재 수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한편 최근의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결국 GVCs 심화에 따른 고기술 노동 수요 증가와 자본·금융 중심의 편향적 이윤배분 구조가 발생시킨 정치적 압박에 기인하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의 표면적 발생원인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이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기술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이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역시 금 번 위기를 통해 산업 및 무역구조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GVCs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GVCs 재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하여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확대로 빠르게 확대되던 GVCs는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전의 확장세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중간 상호 보복관세 범위가 확대되고 양국 간 통화전쟁 상황까지 전개될 경우, GVCs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기반을 둔 북미 부가가치사슬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부가가치사슬로 이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북미 부가가치사슬을 활용한 고기술 및 중간재 확보와 아시아 부가가치사슬에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경제협력강화와 투자확대라는 이원적 전략목표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조업 연계를 통한 한국 산업 및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교육→정책개발·시행→평가·피드백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GVCs 관점의 산업 및 무역정책 재수립 필요성이다.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산업정책은 부존자원(자본, 노동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GVCs 관점의 산업정책은 국제생산분할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공정을 자국이 담당함으로써 부가가치소득을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외 산업 간 투입-산출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GVCs 관점의 평가지표를 재정립하고, 국내부가가치 기여도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을 식별해냄으로써 산업 및 무역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의 GVCs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시아 GVCs에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은 미·중 통상마찰의 여파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와 외자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진입기준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수입규모 확대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산업화를 통한 성장과정을 일단락하고 산업정책을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4차 산업 혁명시기에 부합되는 미래형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개방확대와 아시아 지역의 고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GVCs에서 핵심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및 투자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협상 과정 중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문제 삼으며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³²⁾ 이에 중국은 2018년 9월 ‘중미 경제무역 마찰과 중국의 입장’의 백서를 통해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정부는 수출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자유화 및 시장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한편 중국은 환율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안화의 지역화와 국제화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2009년 ‘대외무역대금 위안화결제 시범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하고, 통화스왑 및 위안화 역외시장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INE)에서 위안화표시 원유 선물거래를 개시한 바 있다.

32)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 의거하여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위스, 인도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한국의 대중 및 대 세계 가격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교역구조 및 경합관계에 따라 효과가 상쇄되어 그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을 경유해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 흐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 통화질서 안정화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대중 환율 압박이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도 제고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현재 한국은 53개 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등 중간재 연결공정제품이 FTA의 대표적 수혜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요건, 원산지요건 및 절차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FTA 수출입 활용률은 각각 70.0%, 74.0%로 분석되나, 한·아세안, 한·중 FTA의 수출활용률은 각각 46.1%, 49.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FTA 이해부족과 원산지요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는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초과관세는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부과된다.³³⁾ 또한 중국 역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미국산으로 판정된 품목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한·중 또는 한·미 중간재 연결공정제품을 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은 원산지 검증에 의한 추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인 2014년도 투입-산출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산업연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통계의 구조적 한계(산업적 주재 포착 등)로 인해 서비스 분야의 영향이 왜곡

33)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제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특성상 세부산업별 무역 구조와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통상마찰은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환율변동, 심리적 요인 등의 간접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키지만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제 구축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내영·심해정 (2018),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가별 국가별 GDP 영향 비교 : 세계산업연관표 분석”, 「TRADE FOCUS」, 2018년 28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 1-18.
- 권태현·이인규 (2016),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pp. 1-4.
- 김석민 (2018), “미·중 무역분쟁과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대응전략”, 「2018 지역경제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p. 6.
- 김재덕·홍성욱·김바우·강두용·김혁중 (2014),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01, 산업연구원, pp. 1-178.
- 문병기·정귀일 (2018),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TRADE BRIEF」, No.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 1-8.
- 백승진·김부경 (2017),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pp. 1-19.
- 윤우진 (2016), “글로벌가치사슬과 한국산업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16-797, 산업연구원, pp. 1-158.
- 이우기·이인규·홍영은 (201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BOK 이슈노트」, No. 2013-4, 한국은행, pp. 1-16.
- 최기산·장태윤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8-11호, 한국은행, pp. 1-16.
- 최낙균·한진희 (2012),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보고서」, 1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225.
- Johnson, Robert C., Guillermo Noguera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6, No. 2, pp. 224-236.
- Koopman, Robert, William Powers, Zhi Wang and Shang-Jin Wei (2011),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Tracing Value Added in Global Production Chains”, NBER Working Paper, No. 16426, pp. 1-38.

- Stehrer, Robert (2012),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d Added in Trade”, wiiw Working Papers, No. 81, pp. 1-19.
- Wang, Zhi, Shang-Jin Wei, and Kunifu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 No. 19677, pp. 1-49.
- Wang, Zhi, Shang-Jin Wei, Xinding Yu and Kunifu Zhu (2016), “Characterizing Global Value Chains: Production Length and Upstreamness”, NBER Working Paper, No. 23261, pp. 1-77.